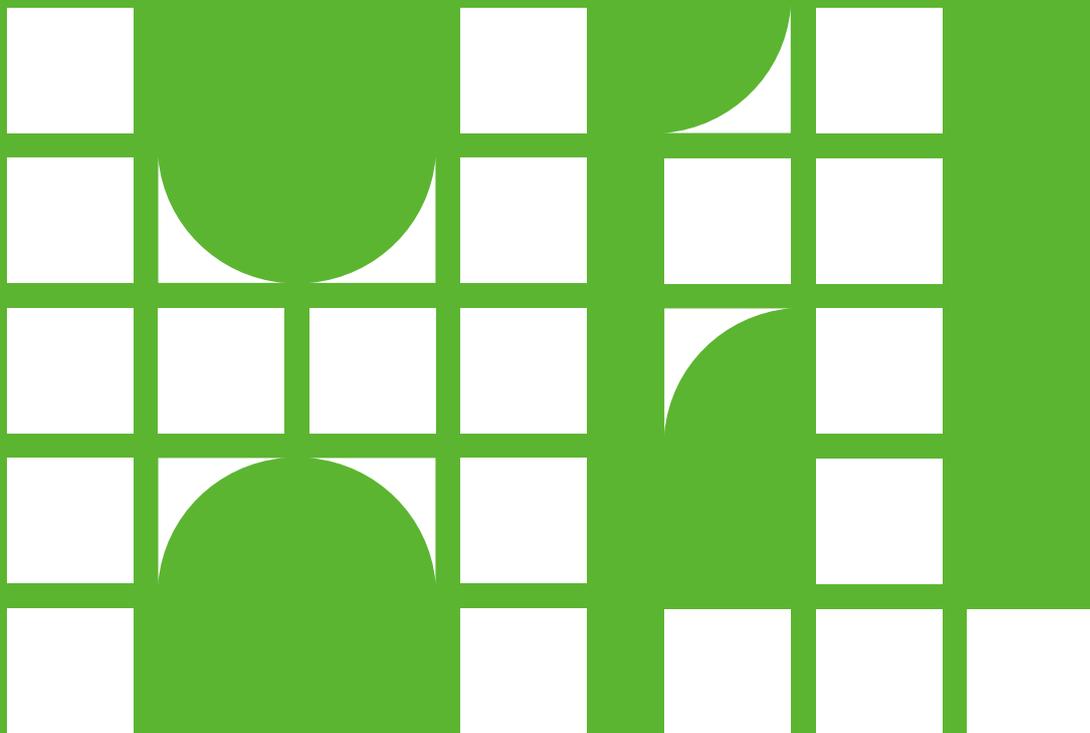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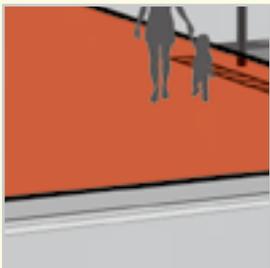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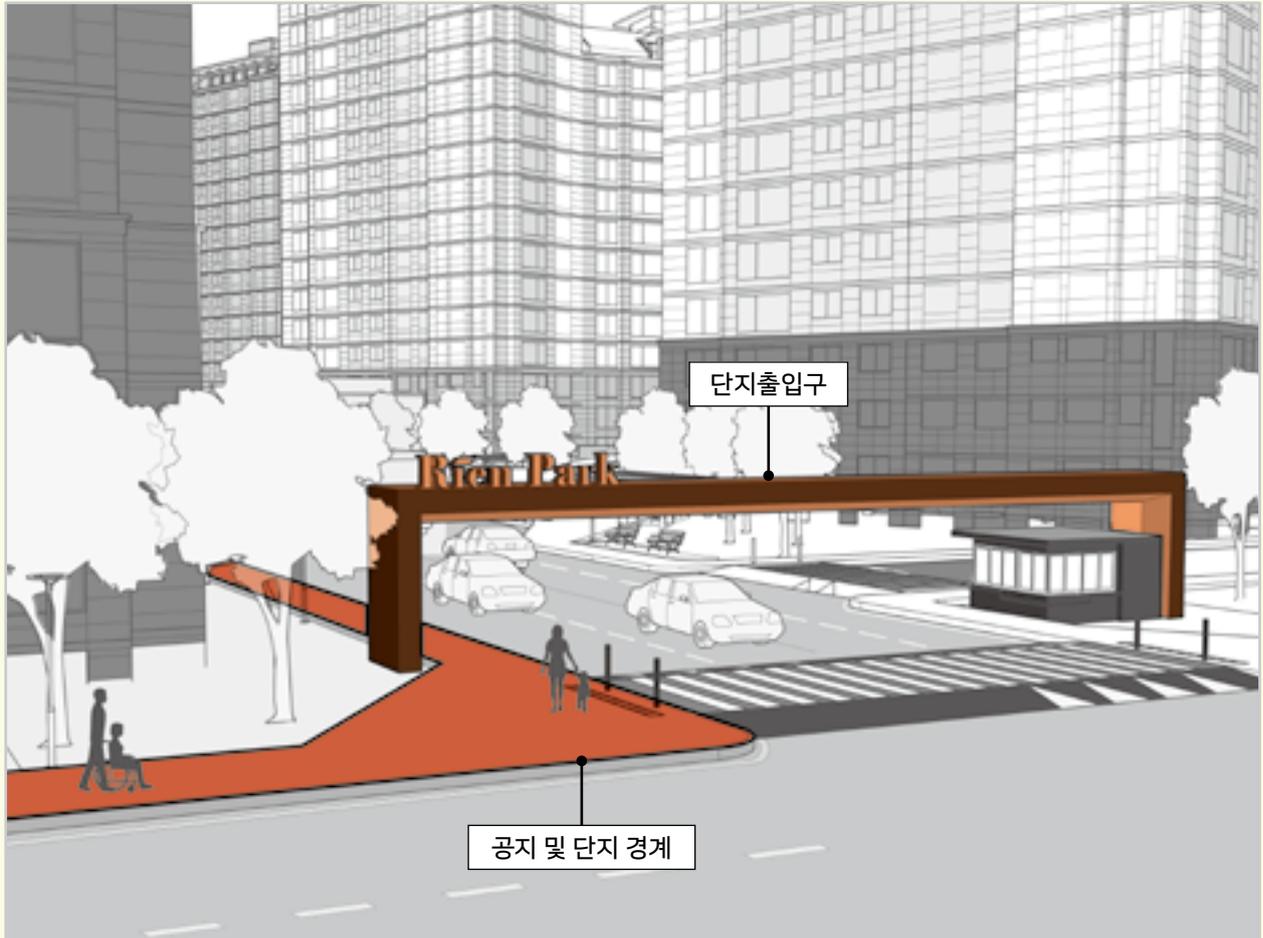
옥외공간



(1) 외부 접점공간	15
(2) 단지 내 이동공간	23
(3) 차량공간	30
(4) 안내 및 기타공간	38



(1) 외부 접점공간



계획원칙

- 단지 주출입구는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 등 방문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, 단지 내외부 경계는 주야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.
- 단지 경계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

1

공지 및 단지 경계

기본지침

- 단지 내외부 경계는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,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 및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한다. 다만, 단지 내 입주민의 범죄 안전을 고려해 침입 차단, 경계부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되 경계부 차단시설은 지나친 시각 및 물리적 차단이 되지 않도록 한다.
- 공개공지로 조성된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동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,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시설을 설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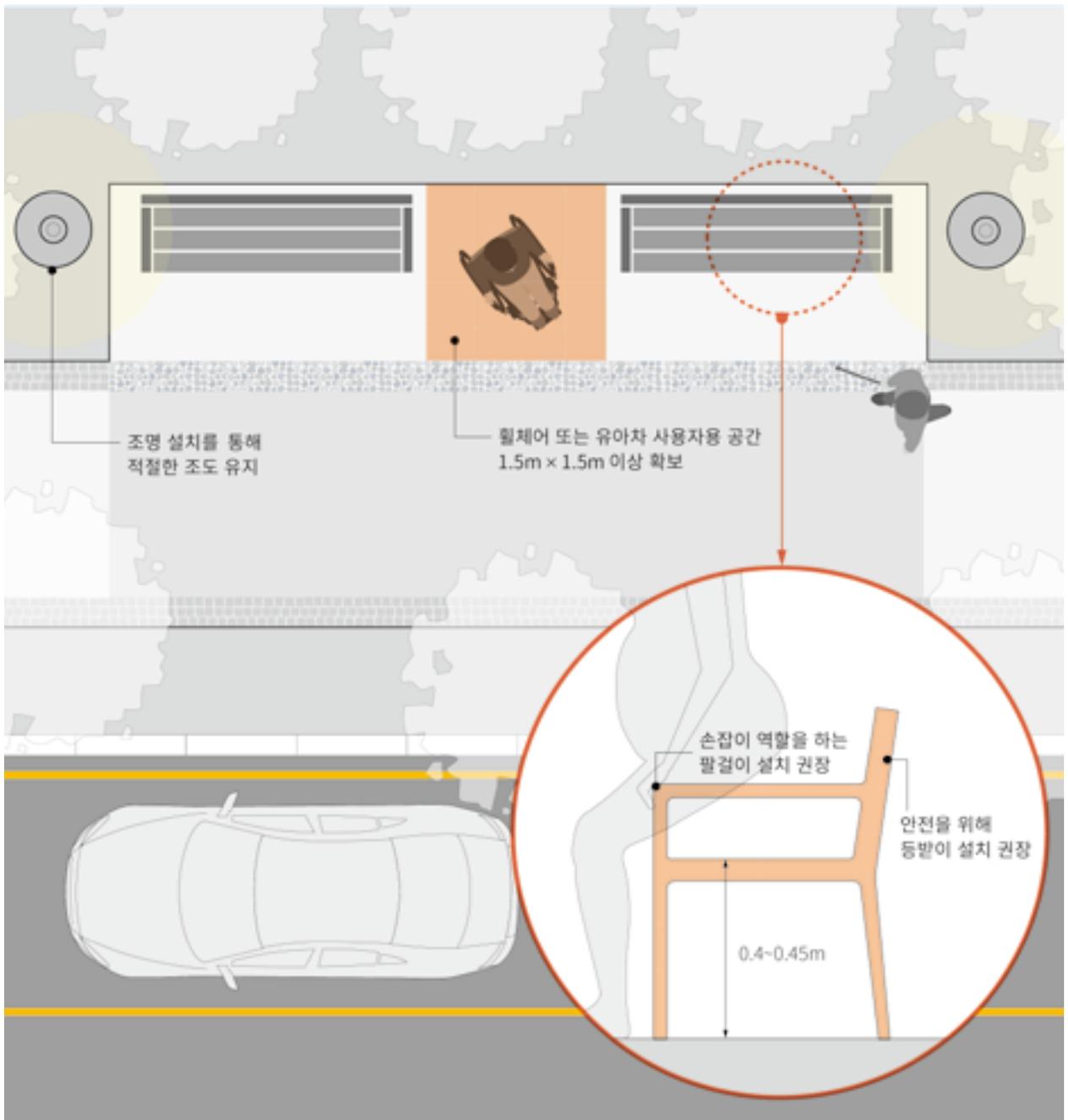
개방된 단지 경계

- 단지 경계에 설치되는 담장은 외부인의 침입 차단과 자연 감시를 통한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투시형 담장 혹은 생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.
- 담장 등을 경계로 주거공간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

공개공지 활용

- 공개공지는 외부 보도의 보행안전공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.
 - ▣ 공개공지와 관련된 사항은 '공공건축물-보도와 대지의 접점공간(공지)'를 참고
- 휴게공간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휠체어 사용자, 유아차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고, 휴게의자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한다.
 - 휴게공간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(시설물, 조경구역 활용)에 설치하며, 유아차,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감
 - 휴게공간 내에는 휴게의자 외의 유아차,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
 - 설치되는 휴게의자의 1/2 이상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설치 권장
 - ▣ 휴게공간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'보도-보도상의 시설물-보행편의시설'을 참고
- 주야간 누구나 안전한 휴게공간 이용을 고려하여, 야간 얼굴인식이 가능한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.



2

단지 출입구

기본지침

- 단지 주출입구는 방문자 누구나 쉽게 주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, 저시력자 등 누구나 쉽게 단지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.
- 단지 출입구의 내외부 경계 지점과 출입문 등은 단지 외부 보행로에서 단지 내부까지 주야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 단, 단지 내부로 연결되는 보행로의 기울기 확보를 위해 단지 외부의 기존 보행로에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- 단지 내외부 차량 진출입구는 보행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, 누구나 차량 접근에 대한 쉬운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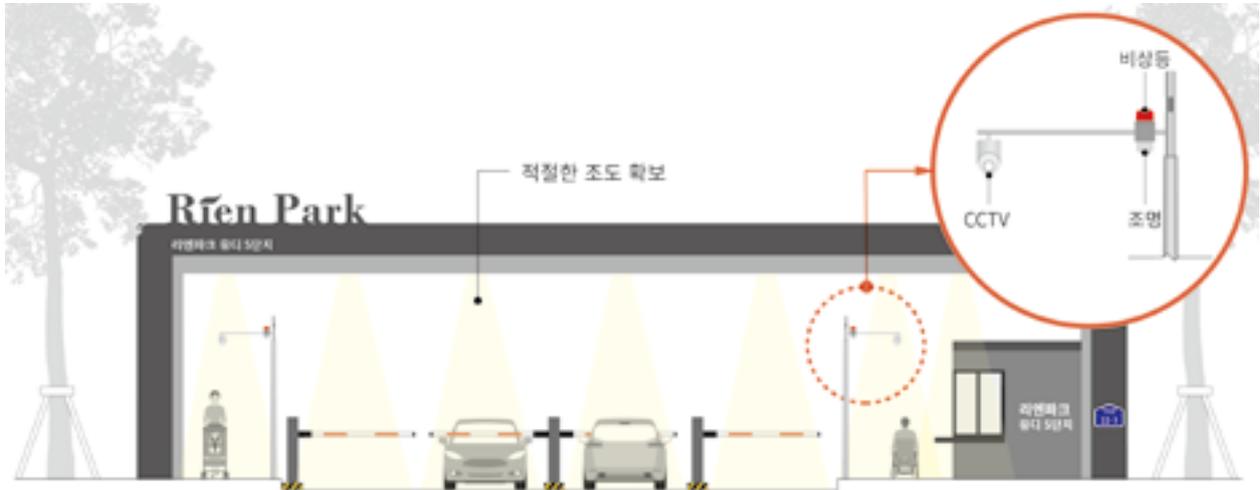
인지성 확보(출입구 인지)

- 시설물(상징물, 문주, 조경수 등)을 설치하거나, 구분할 수 있는 바닥마감재(색상, 재질 등)를 통해 인지성과 영역성 확보를 고려한다. 단, 지나친 경계 구분이나 단절감으로 인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.
- 주거단지 명칭 또는 주소 표시는 쉽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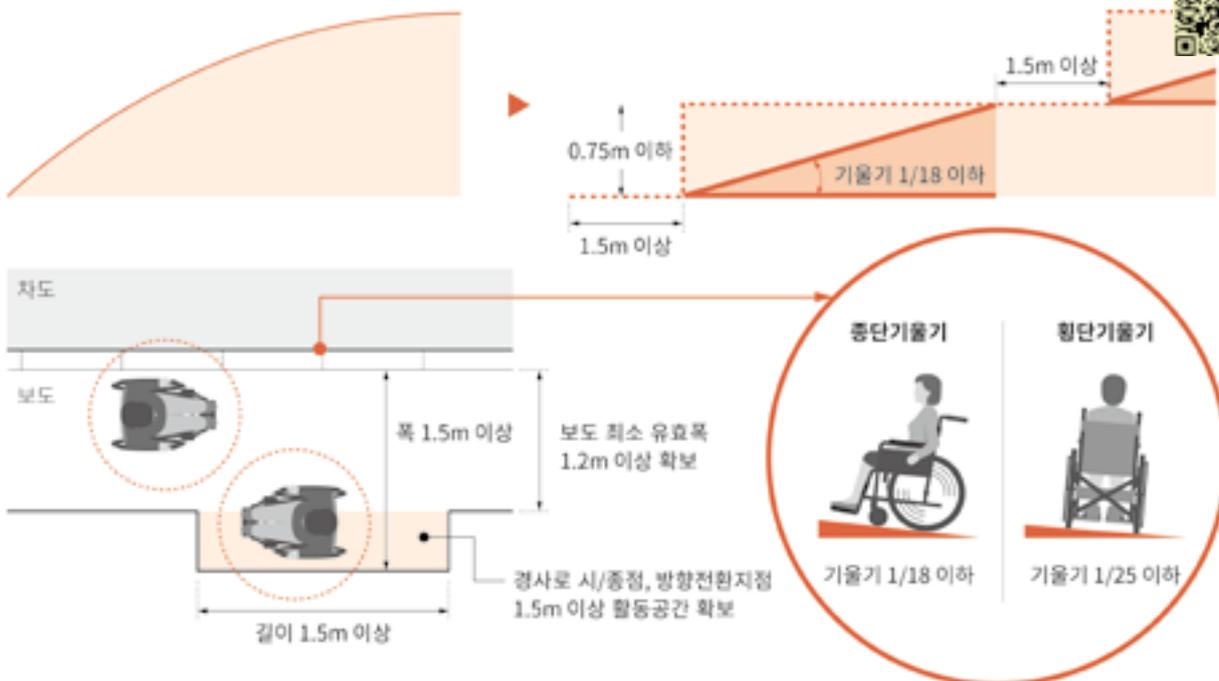
인지성 확보(안전공간화)

- 단지 출입구에는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위해 경비실, 차량 및 보행자 감시용 CCTV 등을 설치한다.
- 문주 하부, 산책로, 경비실 인근에 야간 보행자의 시인성 개선 및 안전한 이동을 위해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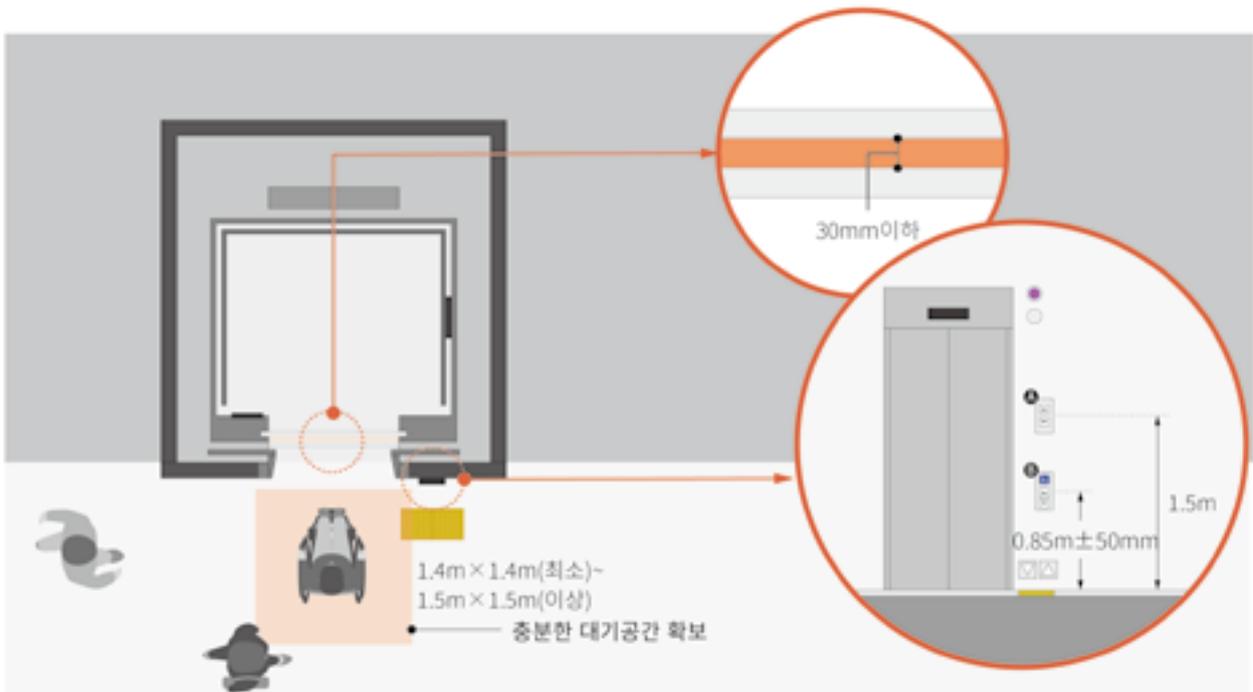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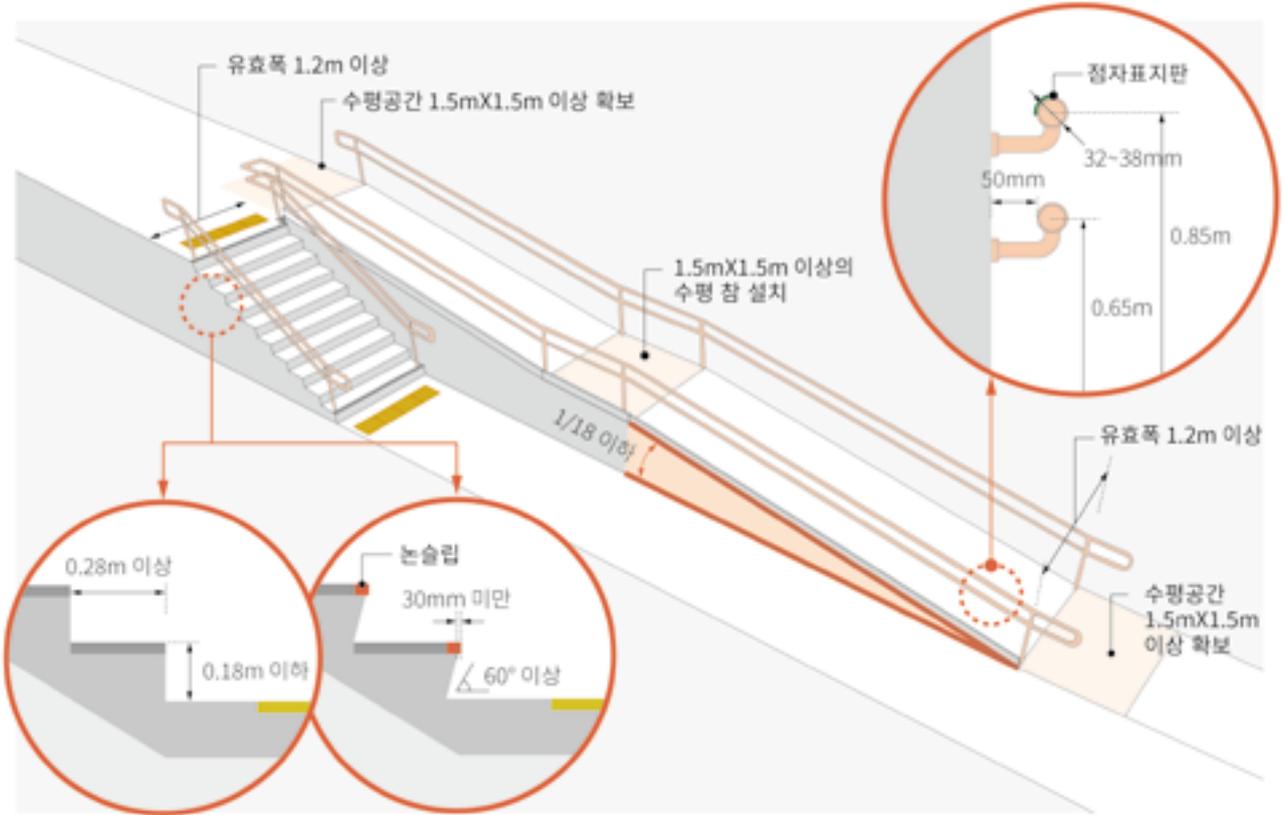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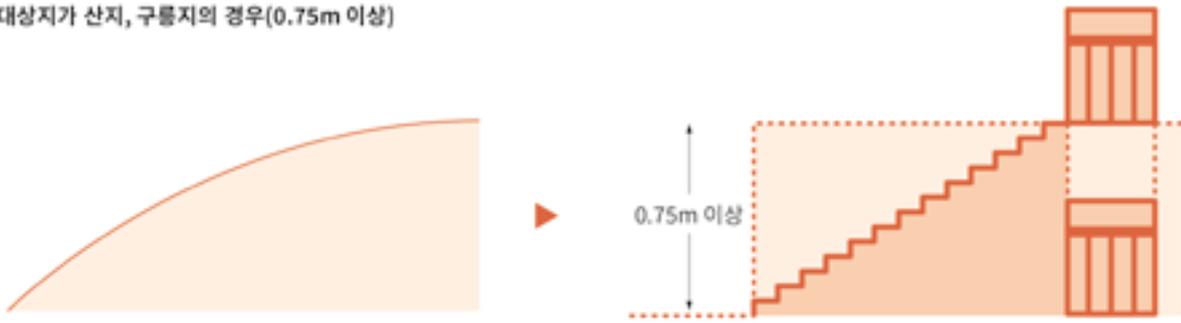


경계부 높이 차이 제거

-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구분한다.
- 보행로는 단지 내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, 외부 보도와 단지 경계의 접점에서 급격한 높이 차이로 인한 경사나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.
 - 단지 외부 보행로의 횡경사는 1/25 이하로 처리
 - 단지 내부로 이어지는 보행로는 종단 1/18 이하, 유효폭 1.2m 이상 확보. 단, 경사로 시/종점과 방향 전환 지점은 1.5m 이상의 수평 활동공간 확보
- 산지, 구릉지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경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0.75m 이하의 높이차이가 되도록 계획하며, 높이 차이 극복을 위해 법적 기준에 적합한 계단 및 경사로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한다.
 - ▣ 수직이동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'공원-내부 이동 및 이용공간-내부이동공간-높이 차이 제거', '공공건축물-내부이동공간-수직이동공간-승강기 설치 기준'을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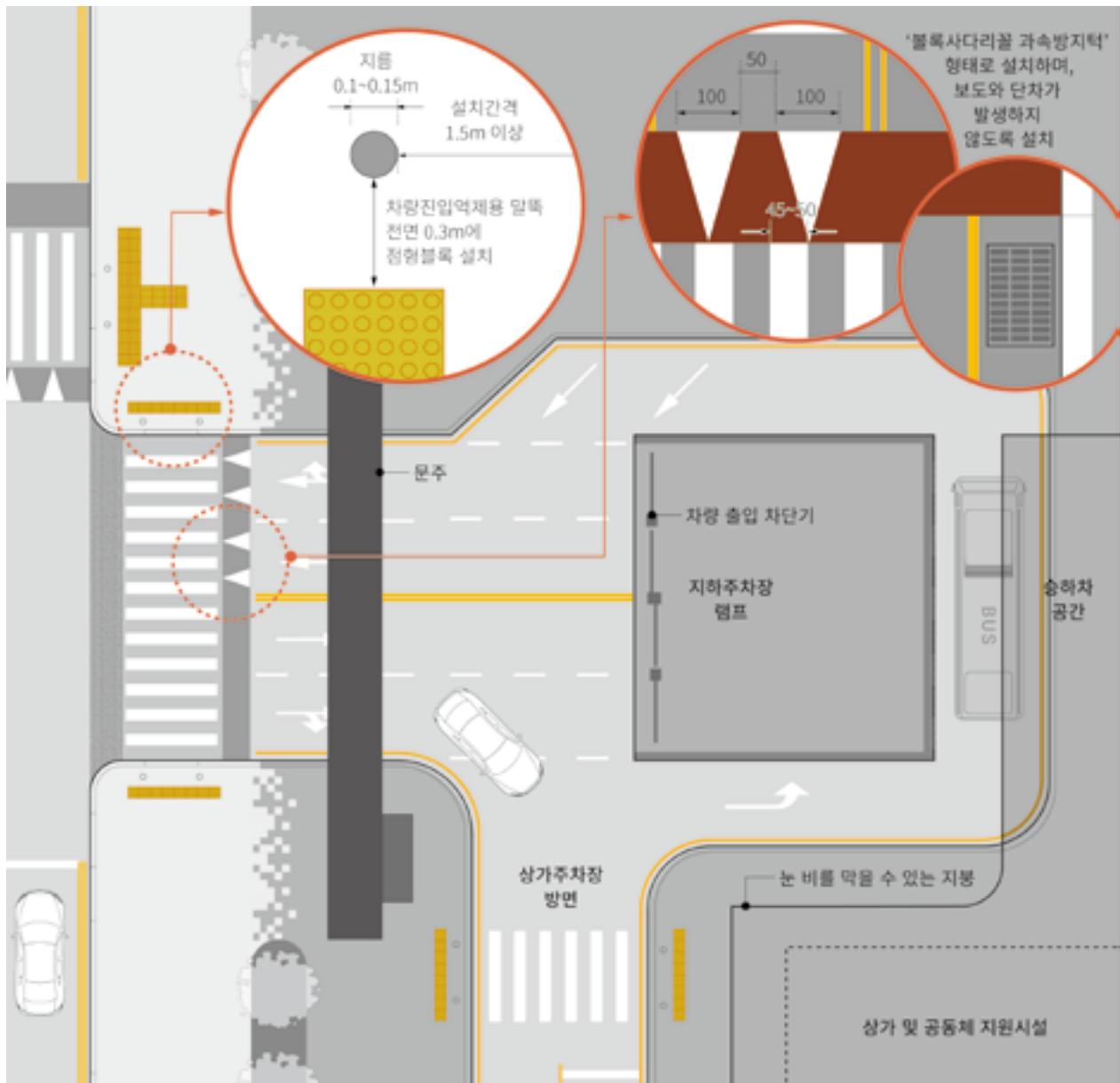


대상지가 산지, 구릉지의 경우(0.75m 이상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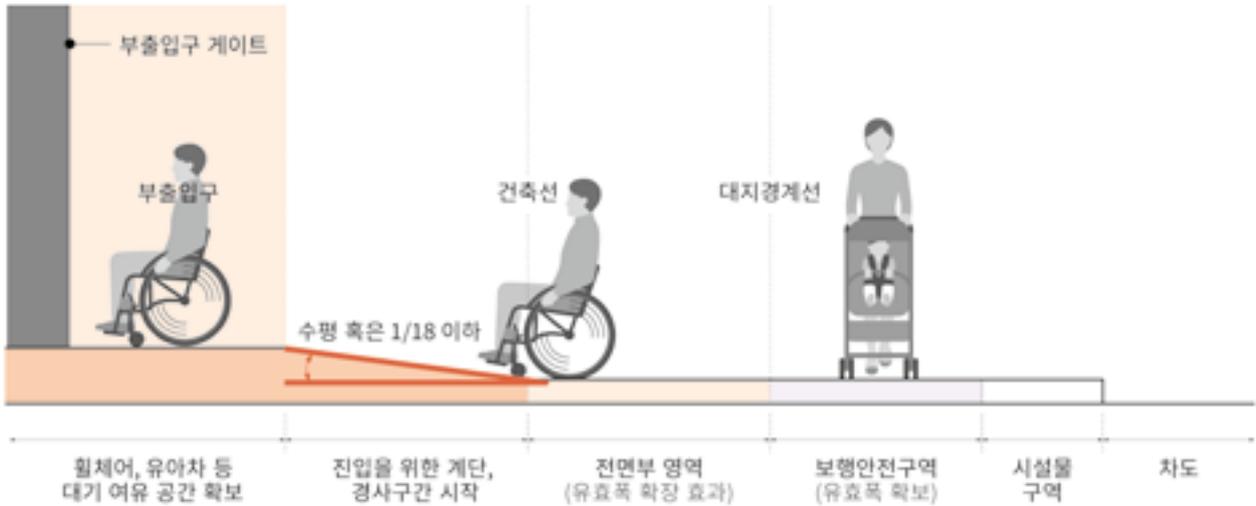
차량 진출입구 및 차량통제

- 단지 출입구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차로 횡단이 가능하도록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.
 - 호우 시 물 고임 방지를 위해 경계부에는 미끄럽지 않고, 틈새가 좁은 배수 설비를 설치
 - 횡단보도의 경계 및 대기공간에는 이질재, 경고블럭,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등 주의·경고 시설을 설치
- ▣ 보차교행구간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'보도-보차교행구간-차량 진출입구'를 참고
- 차량 출입 차단기 전후 공간에는 1대 이상의 차량 정차공간을 확보하며,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.
- 차량 출입 차단기에는 방문객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출입 요청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
 - 카메라 내장된 관리자 통화/호출 설비, 차량 자동인식 등 지원설비 설치 권장
- 주출입구 인근에는 승하차 공간 및 회차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하여, 옥외 승하차 이용자 등의 편의를 확보한다.
 - 옥외 승하차 공간은 주차장 진출입 차량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설치
- 단지 출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차량동선을 짧게 계획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.



부출입구 설치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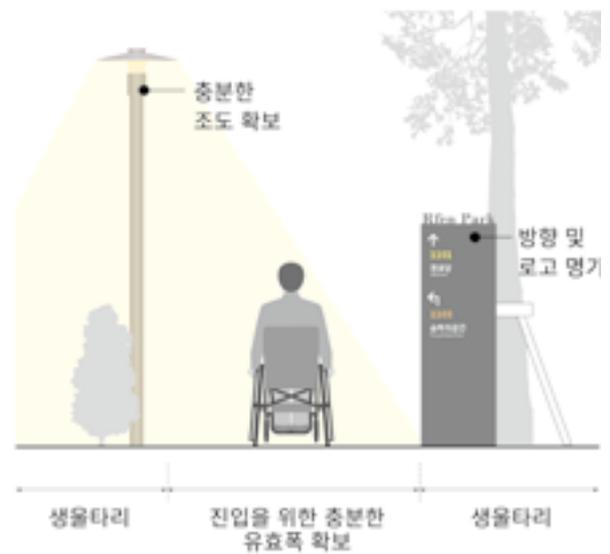
- 보도에서 수평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, 지형상의 이유로 계단, 경사로 등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.
- 출입문 설치 시에는 조작 설비의 위치, 문의 형태와 규모, 보안키 등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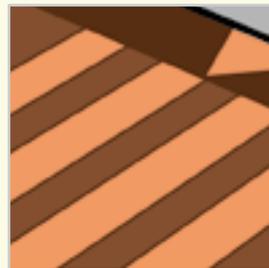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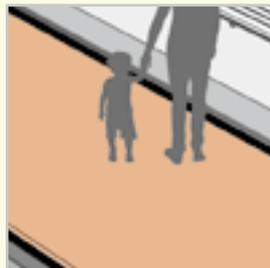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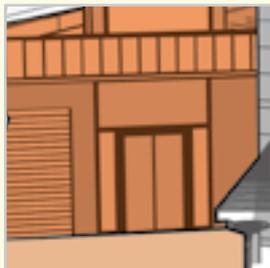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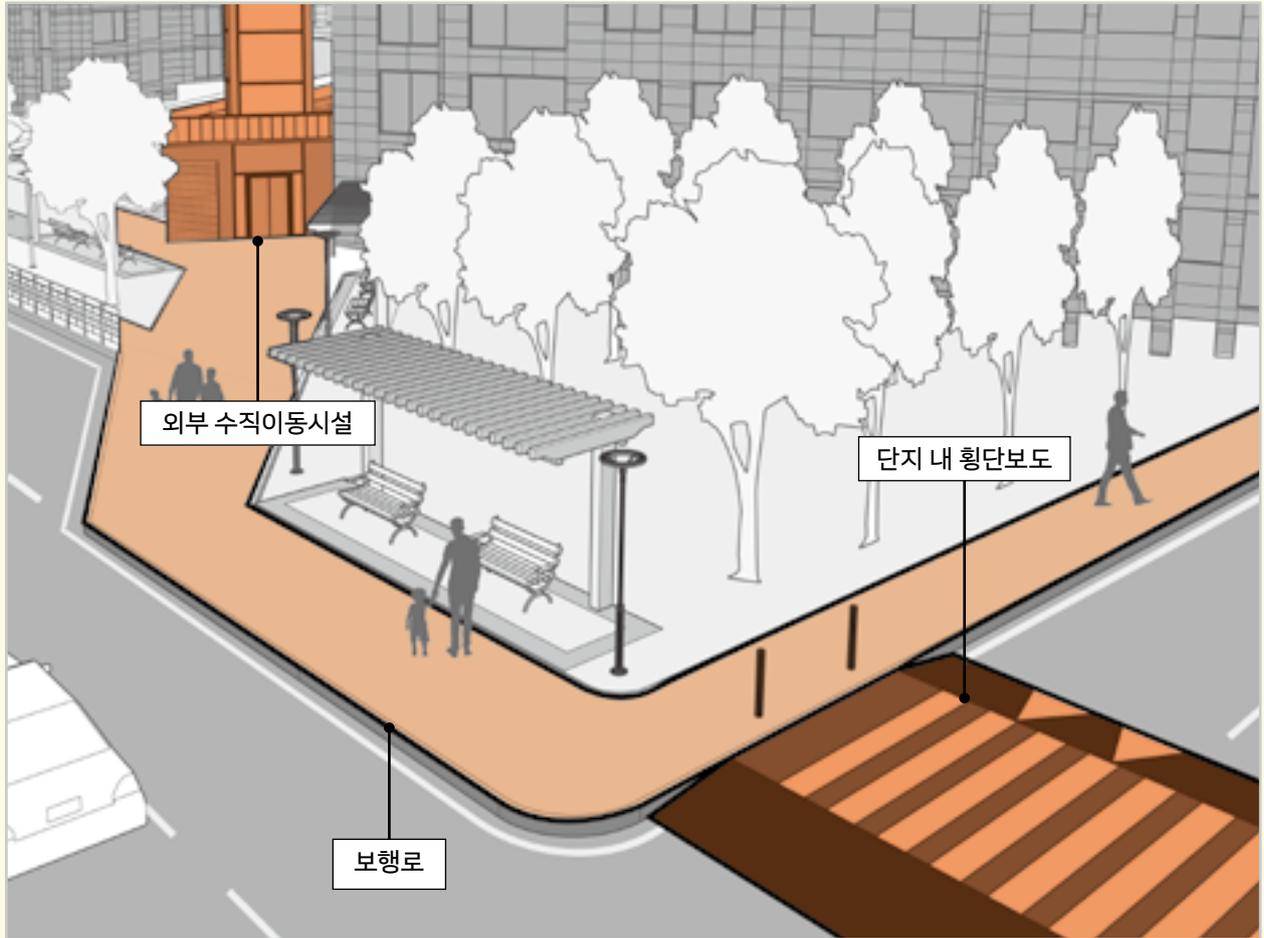
부출입구 게이트가 있는 경우



부출입구 게이트가 없는 경우



(2) 단지 내 이동공간



계획원칙

- 단지 내 주거동, 각종 공간과 시설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보행보조기 이용자, 저시력자 등 누구나 주야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단지 내 보행로는 장시간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단지 내 옥외 공간은 보행자 누구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계획하되, 불가피하게 차로 횡단 구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누구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단지 내 보행로 상에 높이 차이 또는 단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보행보조기 이용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(또는 승강기)와 계단을 설치한다.

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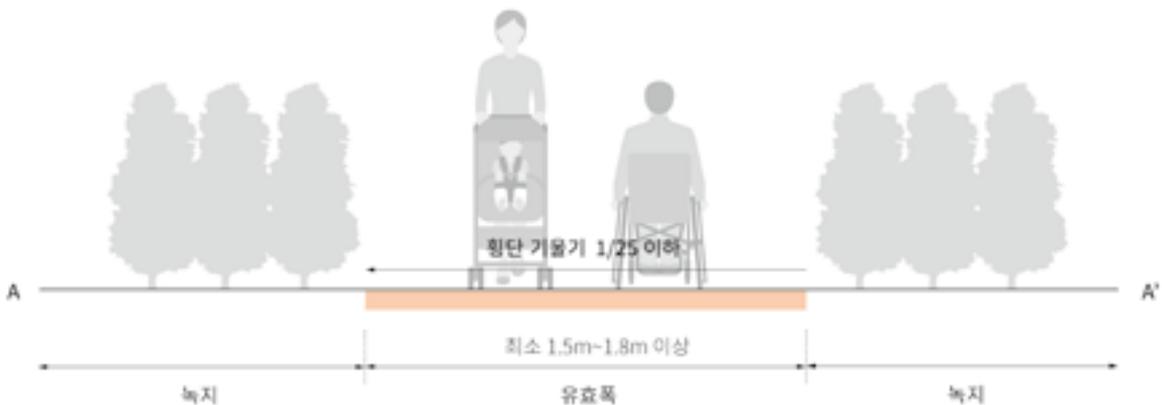
보행로

기본지침

- 단지 외부 경계에서 내부의 각 주거동과 각종 공간 및 시설 등의 출입구까지는 누구나 주야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.
- 단지 내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 자전거도로와 연속성을 갖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되,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한다.

보행안전공간 확보

- 주 이용시설과 연결되는 보행로는 누구나 보행 및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.
 - ▣ 보행로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'공공건축물-접근공간-보행접근'과 '공원-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-내부이동공간'을 참고
- 거주자 및 외부인의 단지 내 시설 이용, 단지 내 공공공간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광장형, 공원형 등 보행로 설치를 고려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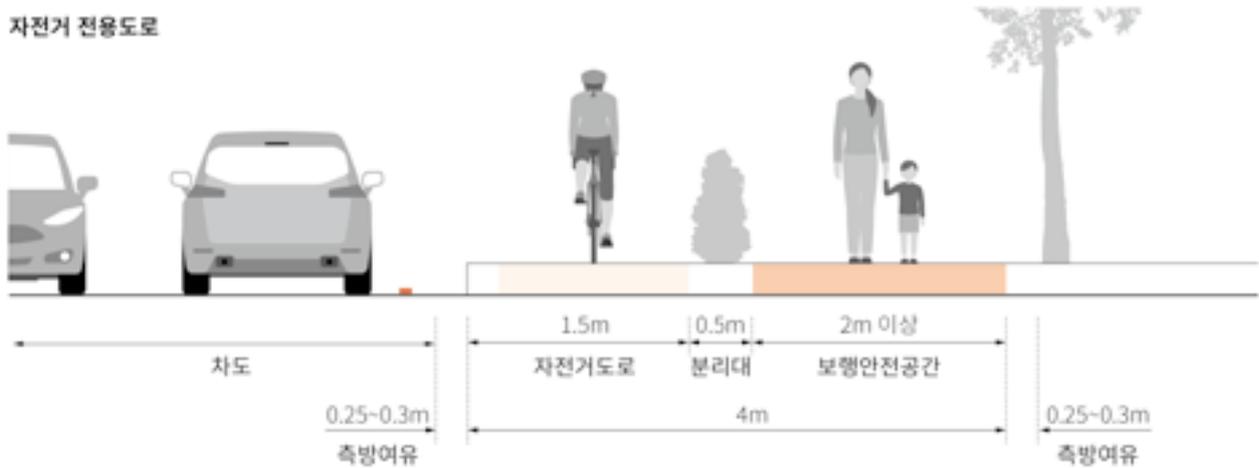


자전거도로와 안전시설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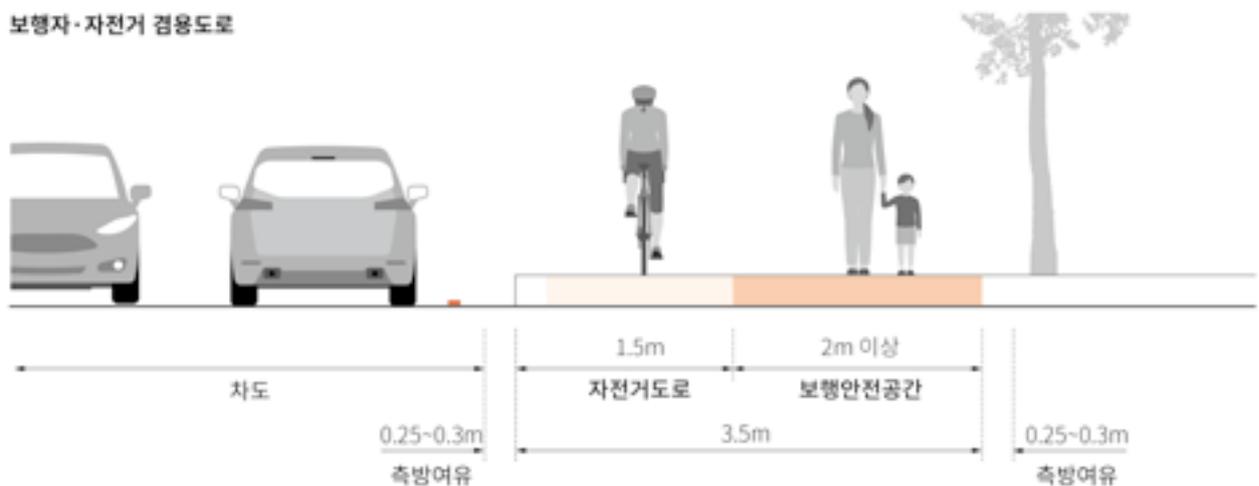
- 단지 내 자전거도로 설치 시 차도 방향으로 설치하고, 주거동 혹은 거치대까지 연속하여 설치한다. 이때 자전거도로는 보행공간과 재질 및 색상이 구분되도록 설치한다.
-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교차구간 발생 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주의·경고 표지를 설치하며, 단지 내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계획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 방법 유도안내 표지를 설치한다.
 - 단지 내부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 설치



자전거 전용도로



보행자·자전거 겸용도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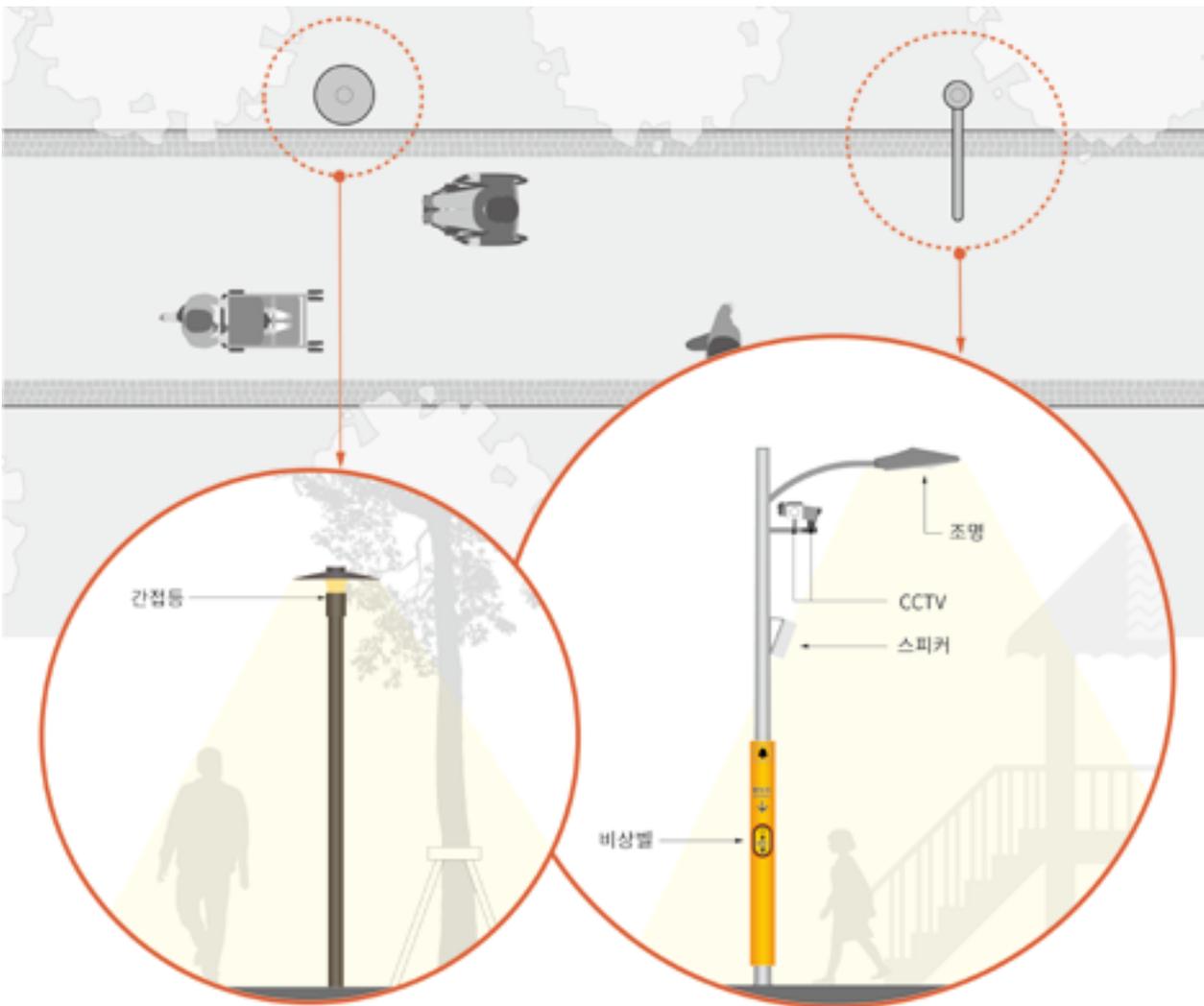


자전거 통행 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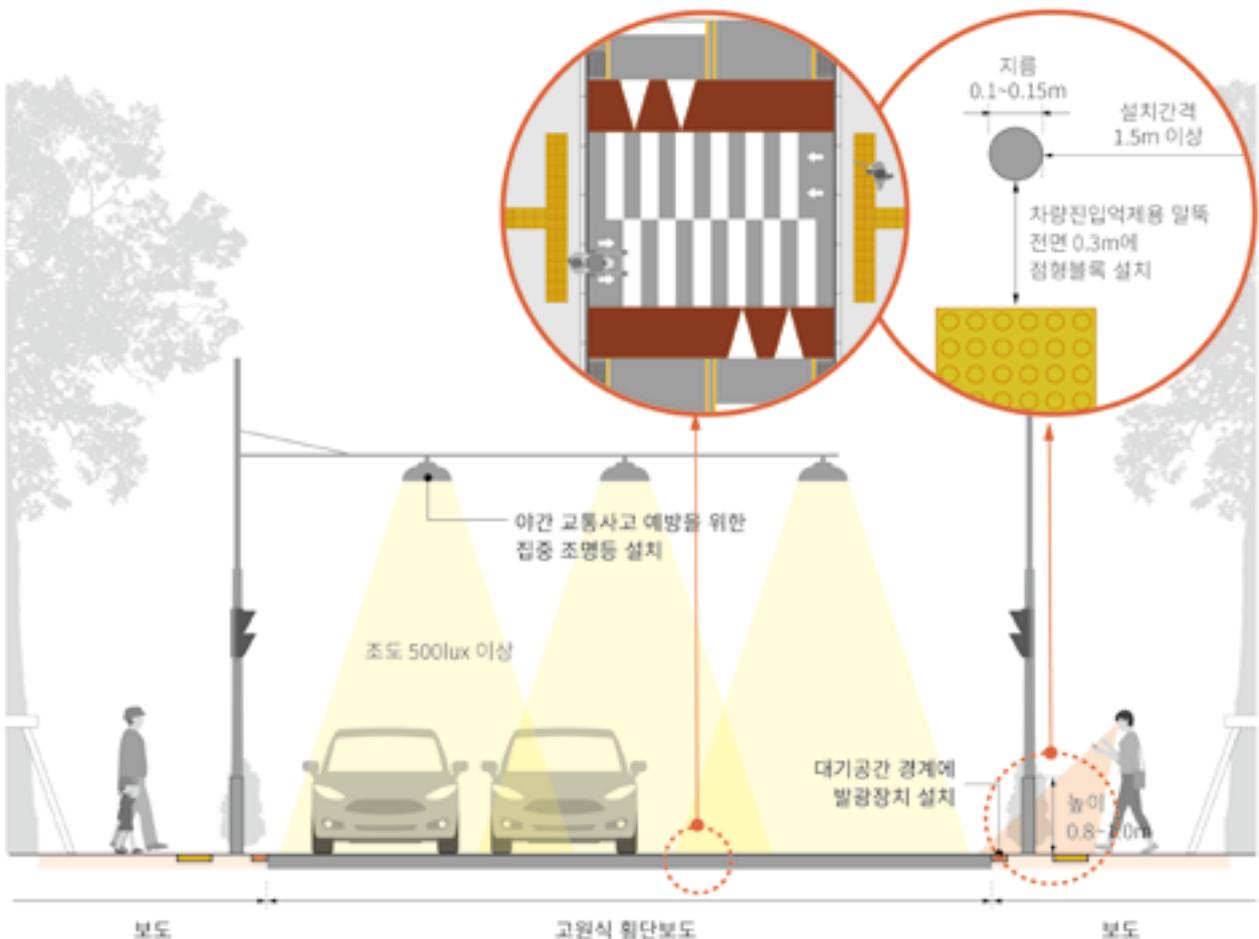
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보행공간

- 단지 경계, 주거동과 그 외 시설에 이르는 보행로 및 안내시설 등에는 야간 이용 시 안전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을 설치한다.
 - 설치 위치: 조명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
 - 설치 간격: 보안등은 30m 이내마다 설치
 - 눈부심 방지: 세대 내부 및 보행자의 눈부심 발생 방지를 위한 간접조명으로 설치
 - ▣ 보행로 조명과 관련된 사항은 '보도-보행안전공간-보행공간의 조도'를 참고
- 자연감시가 어려운 공간에는 CCTV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. CCTV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경공간 등에 지주를 설치한다.
 - ▣ CCTV 등의 세부 사항은 '공원-안전 환경-안심, 안전 보행공간 확보'를 참고
- 어린이놀이터 등 비상벨 설치 시 인지하기 쉽고, 누구나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, 비상 호출장치는 상시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실과 연결하여 설치한다.



기본지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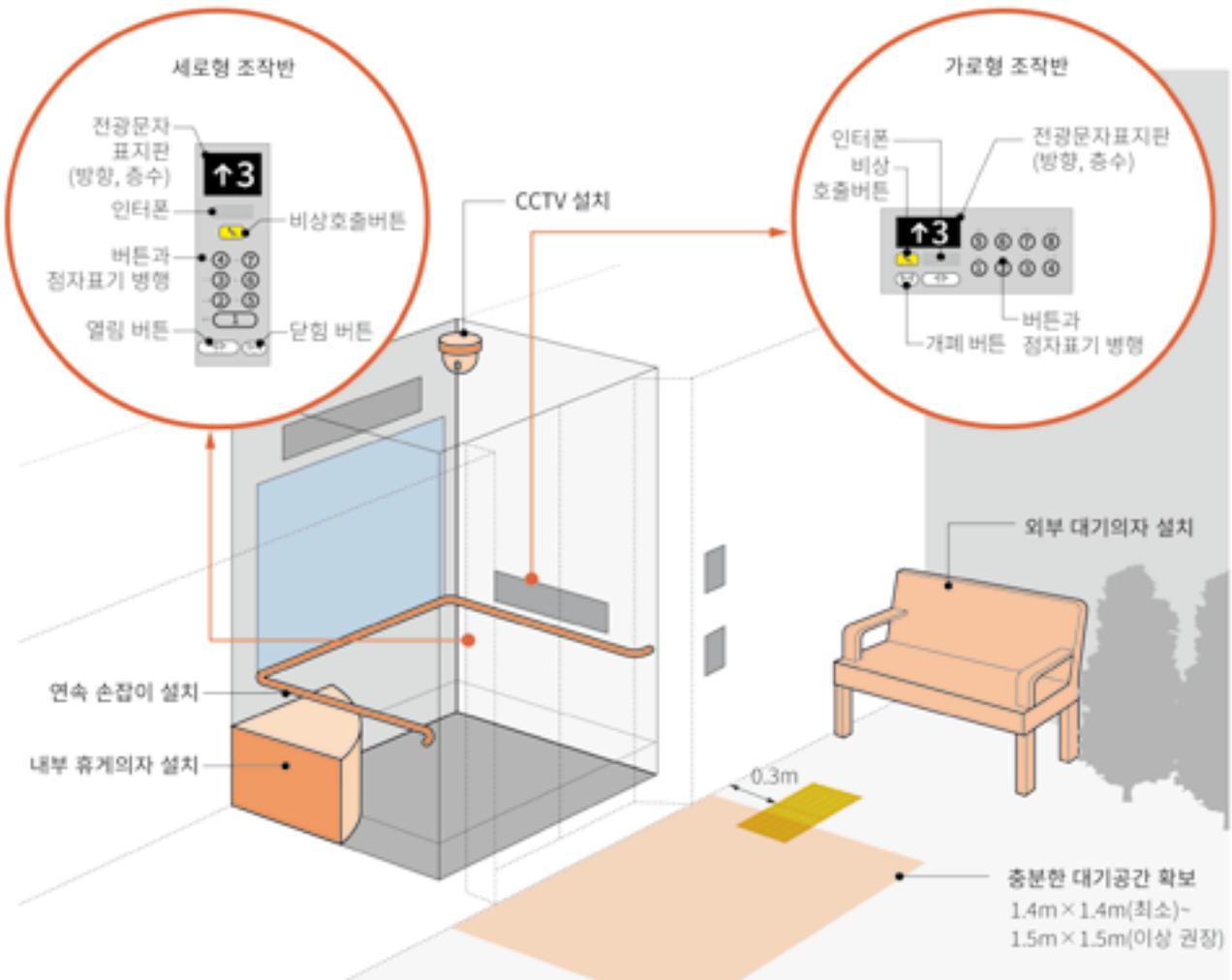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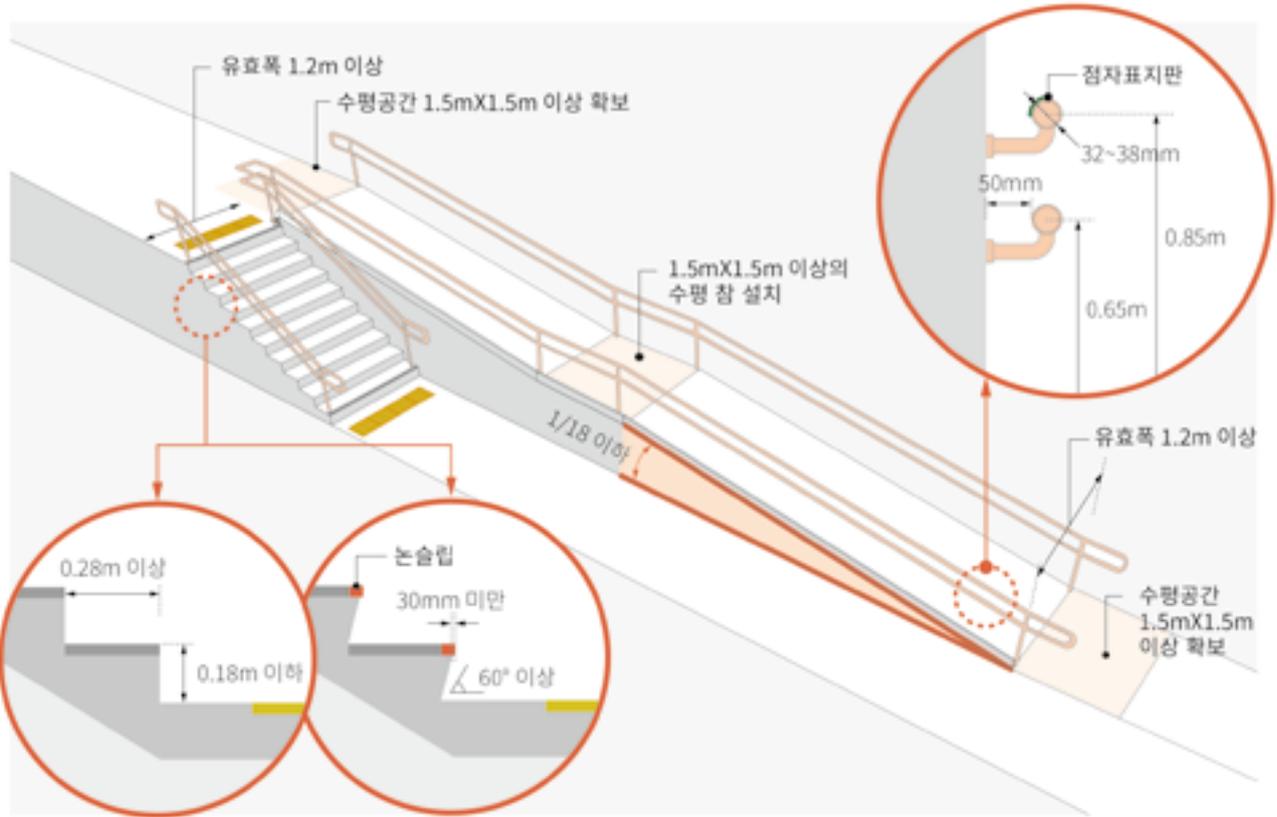
- 단지 내 옥외 공간은 가능한 보행전용공간으로 계획하되, 불가피하게 차량교통 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 대기 및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
- 단지 내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한다.
 - 평단면 폭 2.5m 이상(법적기준에서는 4m 이상으로 하되 보행량이 적은 경우 2.5m으로 설치할 수 있음.) 구조물 경사면과 횡단보도 부분은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고 차도부 경사면은 완만하게 처리
 - 대기공간은 안전한 횡단 대기가 가능하도록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주변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며, 대기공간 및 차로횡단 구간 경계는 경고 재질, 점자블록,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주의·경고 및 안전시설을 설치한다.
 - 횡단 대기 공간은 보행 공간과 색상 및 재질로 차이가 나는 바닥마감 설치
 - 대기 및 횡단 구간은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가로등 조명색을 달리하거나 주변보다 높은 조도를 확보한다. 단, 주변 주거동 등에 빛공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.
- ☐ 그 외 횡단보도에 대한 세부 사항은 '보도-보차교통구간-횡단보도'를 참고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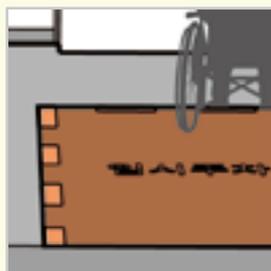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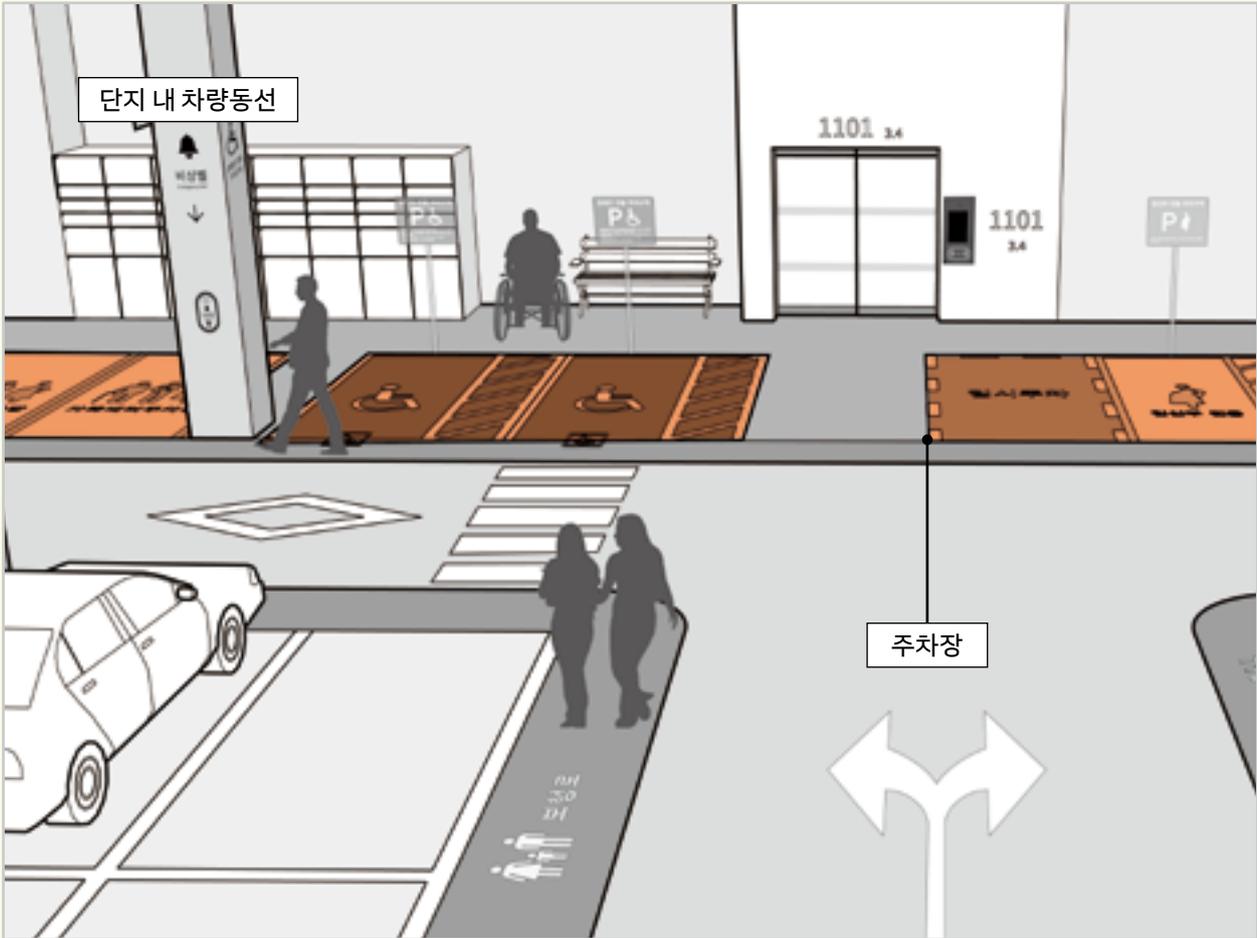
기본지침

- 단지 내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보행보조기 이용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기 및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수직이동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.
-
- 단지 내 보행로는 수평 보행로 또는 완만한 기울기의 보행로가 연속되도록 조성해야 하나,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, 승강기 등 수직이동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.
 - 수직이동시설에는 야간 이용 시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.
 - 겨울철 바닥 결빙, 우천 시 물고임(또는 넘침), 강한 일조에 따른 사용 불편을 고려하여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한다.
 - 입구 캐노피 및 배수설비, 바닥열선, 바닥 미끄럼방지 마감처리, 차갑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, 차양시설 등
 - 단지 내 계단 설치 시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단순한 형태로 설치하며, 경사로는 누구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완만한 경사도로 설치한다.
 - 유효폭: 1.2m 이상
 - 휴식함 및 시/종점 활동공간: 1.5m 이상
 - 수직안전 높이: 2.1m 이상
 - 계단 디딤판은 0.28m 이상, 철타면 높이 0.18m 이하
 - 경사로 기울기: 1/18 이하(횡단구배 1/50 이하)
 - 손잡이: 손잡이는 차갑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되, 외기에 의한 변형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 권장
 - 단지 내 고저차가 심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승강기를 설치하고, 보행편의를 위해 옥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.
 - 승강기는 안내시설 등과 함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, 강한 햇빛이나 우천 시를 대비하여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한다.
 - 승강기 내·외부에는 노인, 어린이 등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대기의자를 설치할 수 있다.
 - 그 외 수직이동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은 '공공건축물-내부이동공간-수직이동공간'을 참고





(3) 차량 공간



계획원칙

- 주차장은 휠체어 사용자, 유아차 이용자 등의 여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, 저시력자 등 누구나 쉽게 출입구, 설치 위치,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인지 및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.
- 주차 후 누구나 목적 공간을 쉽게 인지하고,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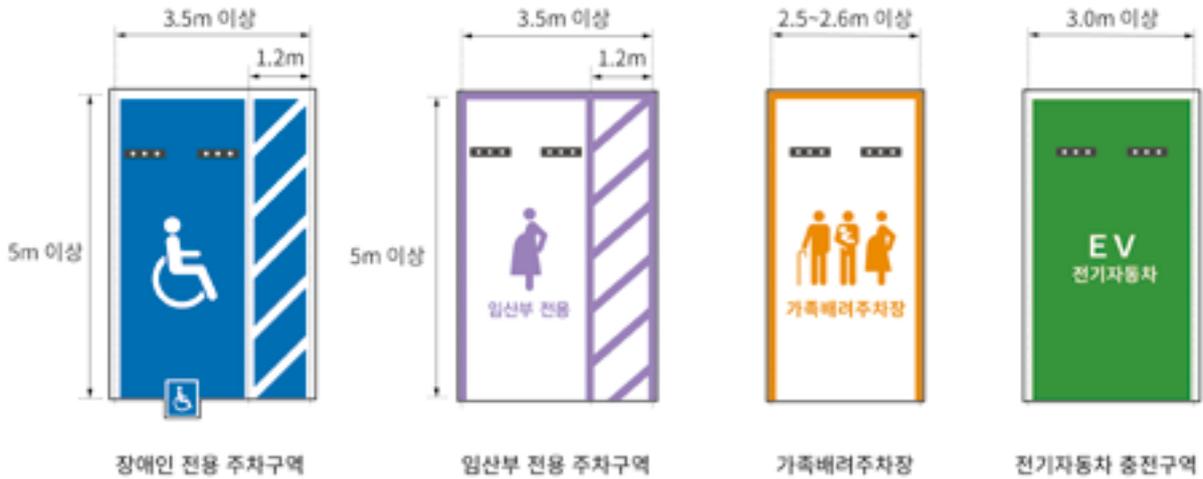
1 주차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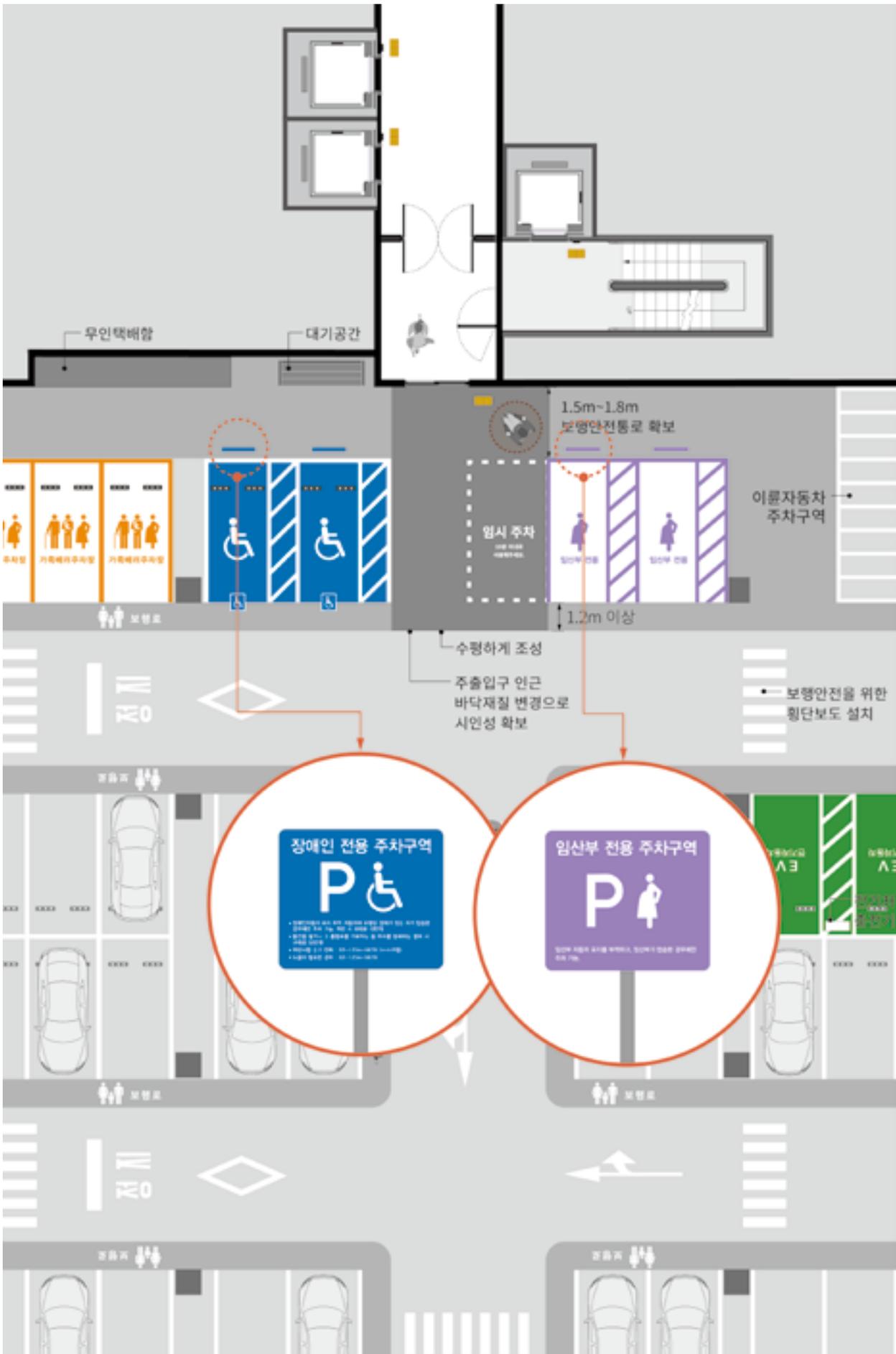
기본지침

- 주차장은 주야간 운전자가 주차구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, 주차장 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공간 및 시설 출입구별 또는 이와 연결된 보행안전공간에 인접하여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, 가족동반 이용자를 배려한 주차구역과 장애인 탑승 차량의 승하차가 가능한 임시 승하차 공간 설치를 고려한다.

주차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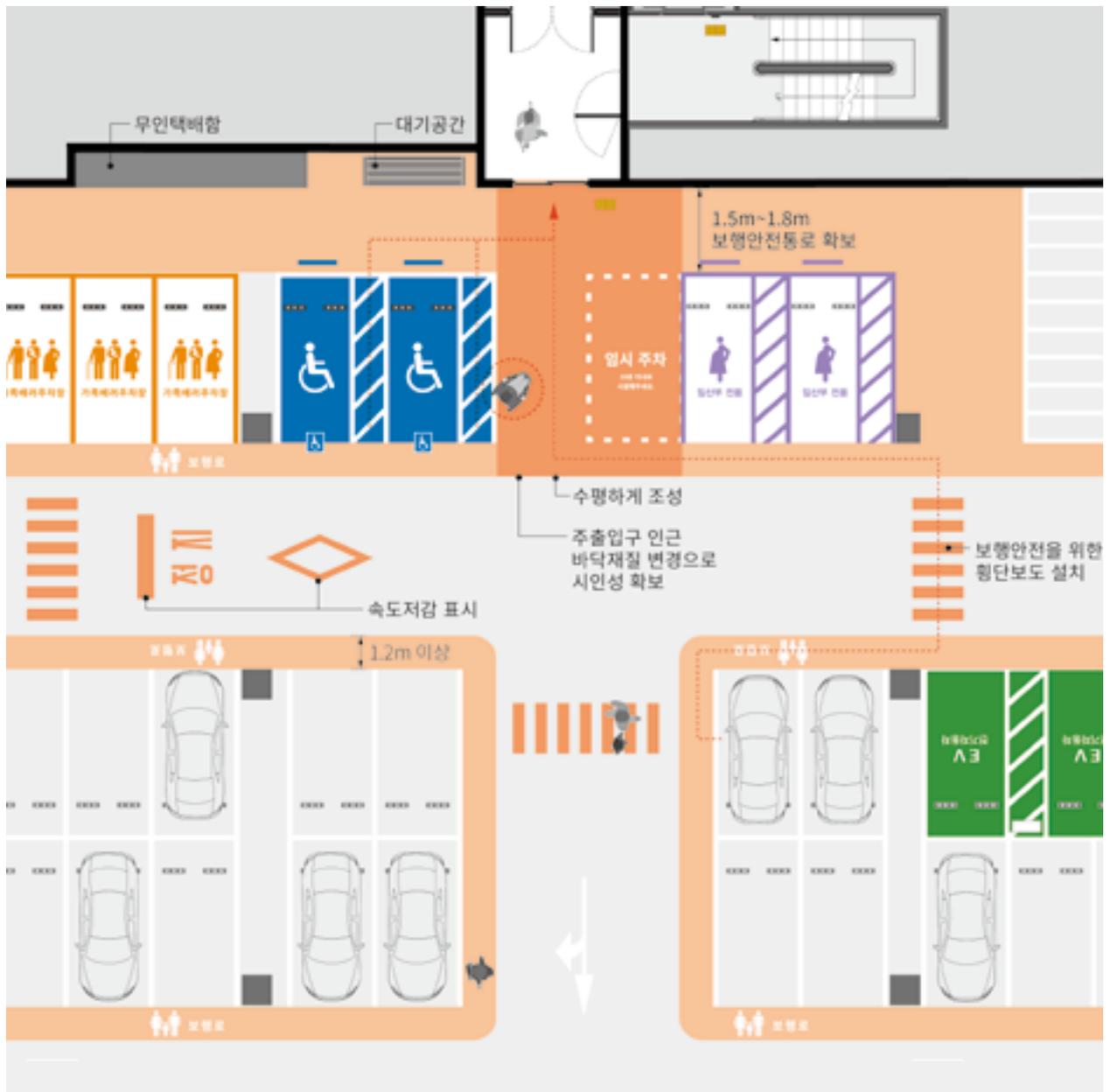
-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적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주동 출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1면 이상 설치한다.
 - 설치 기준: 폭 3.5m, 길이 5.0m 이상, 휠체어 활동공간 1.2m 이상에 색상 등으로 노면 표시
 - 가족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인접 배치하고, 주동 출입구 마다 1면 이상 설치한다.
 - 설치 기준: 폭 3.5m, 길이 5.0m 이상, 유아차 활동공간 1.2m 이상에 색상 등으로 노면 표시
 - 주차구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동 출입구 인근에 임시 승하차 공간 설치를 고려한다.
 - 임시 승하차 공간은 장애인 콜택시 탑승, 택배 차량 상하차, 배달 오토바이의 임시정차, 거주민 등이 장본 짐 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등으로 활용 고려
 - 주차면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이동 동선 일부를 할애하여 배치
 - 임시 승하차 공간 인근에는 휴게 의자가 있는 대기 공간 및 시인성 높은 안내시설 설치 권장
 -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충전 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, 충전기는 장애인 등이 사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확보한다.
 - 설치 기준: 폭 3.0m, 길이 5.0m 이상, 휠체어, 유아차 활동공간 확보
 - 설치 위치: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방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타 시설물과 중첩되지 않은 곳에 설치
- ☐ 그 외 주차장과 관련된 규정은 '공공건축물-접근 공간-차량접근'을 참고한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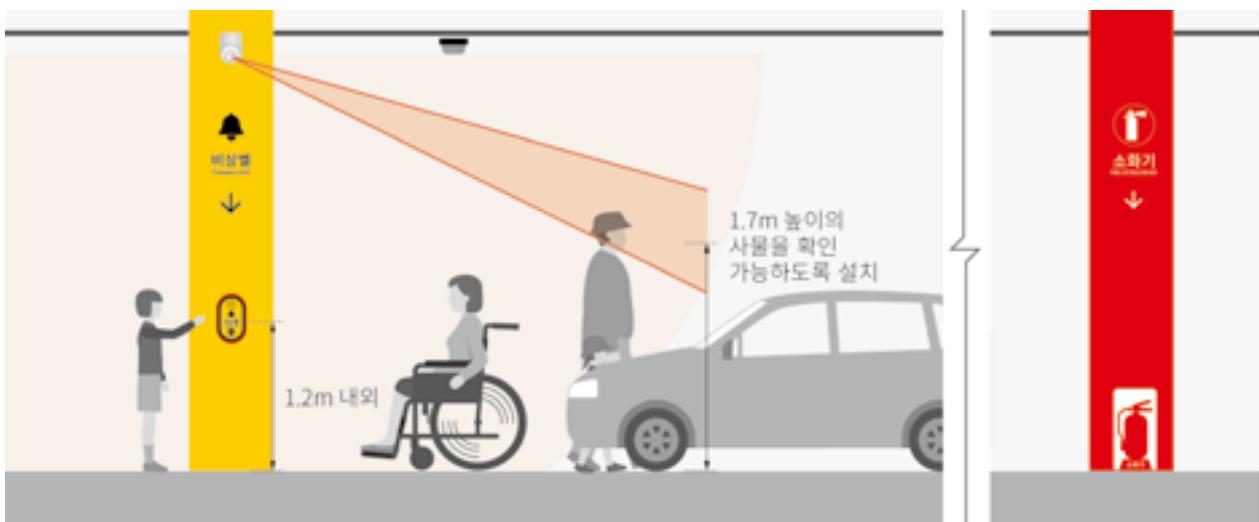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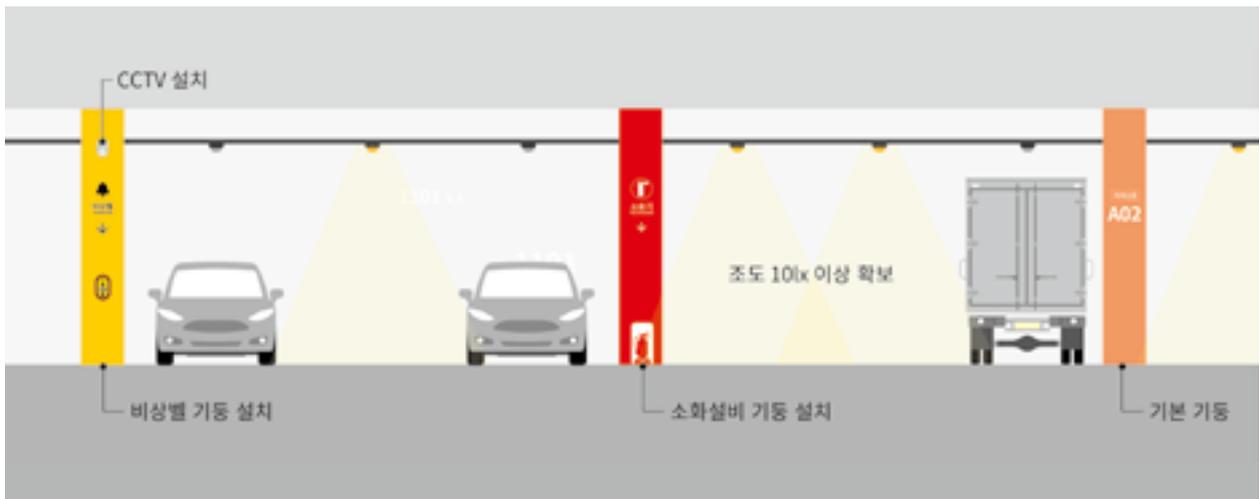
보행안전통로

-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하차 후 주동 출입구까지 차량교행이 없는 보행안전통로를 연속 설치를 고려한다.
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동 출입구가 인접하는 경우 보행안전통로 설치를 예외로 할 수 있음
 - 보행안전통로폭 최소 1.2m 이상 확보
 - 색면, 빗금 처리 등의 차로와 구분되는 시인성 확보
 -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
-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외의 주차구역에서 하차 후 주동 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통로 설치를 고려한다.
 - 보행안전통로폭 최소 1.2m 이상 확보
 - 색면, 빗금 처리 등의 차로와 구분되는 시인성 확보
 -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
- 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안전통로는 횡단보도 표시를 하며, 교행구간 전후에는 속도저감시설, 서행유도표시, 보행자주의 등의 안내표지의 설치를 고려한다.



주차장 안전시설

- 비상벨은 누구나 신속하게 찾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.
 - 설치 간격: 25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
 - 설치 높이: 바닥에서 1.2m 내외 조작버튼 위치
 - 비상벨은 상시 대응 및 확인을 위해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되도록 설치
 - 휠체어 사용자, 어린이, 노인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
- 비상벨, 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기둥은 다른 기둥과 쉽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 - 비상벨 기둥(노란색 계열), 소화설비 기둥(빨간색 계열) 색상은 다른 유도 안내 색상과 쉽게 구분되도록 설치
- 주차구획, 보행통로 등의 상시 감시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한다.
 -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60도 촬영이 가능한 CCTV 제품 설치를 권장
 - 바닥 면으로부터 1.7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
- 주차, 주차 후 이동, 보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은 주야간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.
 - 주차구획 및 차로: 최소 10lx 이상,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
 - 주차장 출구 및 입구: 최소 300lx 이상, 최대 조도 없음
 -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: 최소 50lx 이상, 최대 조도 없음



2

단지 내 차량동선

기본지침

- 차로와 비상 차량동선의 경계와 보행공간은 휠체어 사용자, 저시력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단지 규모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, 학원, 장애인콜택시, 장애인·노인 데이케어센터 등의 통학·통근 차량 이용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하차 구역을 설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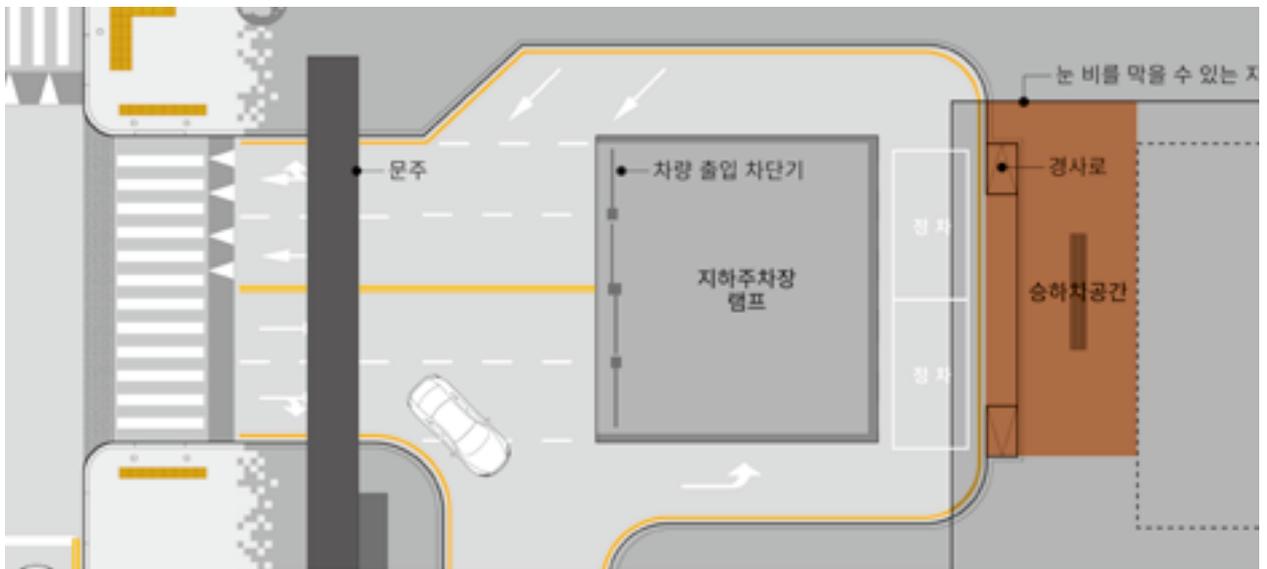
비상 차량동선

- 비상 차량의 진입로의 경사부는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에서 처리하며, 횡경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 - ▣ 차량동선 진입구간과 관련된 사항은 '보도-보차교행구간-차량진출입구'를 참고
- 비상 차량진입 구간 경계에는 불법 주정차 및 진입 방지용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할 때는 비상시 신속한 제거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.
 - 볼라드 등의 설치 간격: 1.5m 이상
 - 볼라드 등의 형태: 높이 0.8~1m, 지름 0.1~0.15m
 - 재질: 보행자 충돌 시 충격 완화가 가능한 재질
 - 인지성: 야간 식별성을 위한 반사띠 필수, 반사 도료/발광 재질/조명 내장 권장
 -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전면 0.3m에 점형 점자블록 설치
 - 이삿짐 운반 등을 고려한 시간제 차량동선 이용 계획 수립 권장
- 소방차 진입구간 및 정차구간은 시인성 높은 바닥 및 입식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 적치, 차량 주정차를 방지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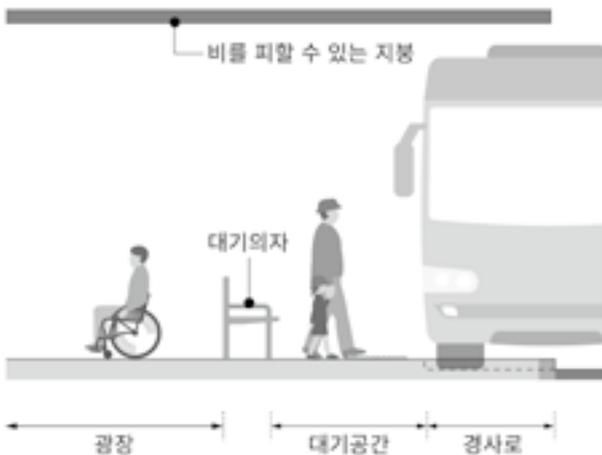


통학차량 승하차 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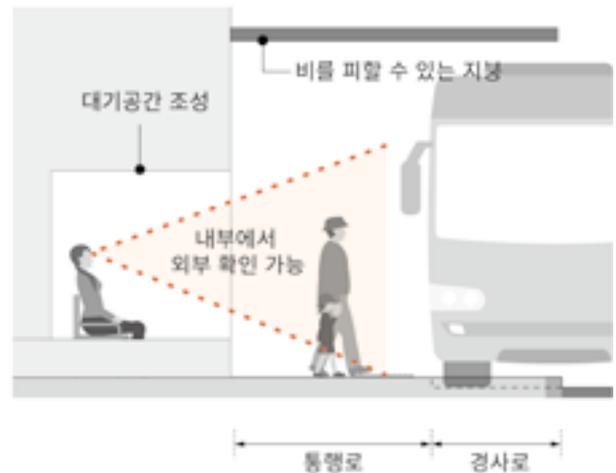
- 승하차 구역은 단지 출입구 인근에 설치하며, 단지 내 어린이집이 위치할 경우 안전상 이동동선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과 인접 배치를 권장한다.
- 옥외 승하차 구역을 조성할 경우 탑승 대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되, 외기 환경에서도 안락하고 편안한 휴게/대기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.
 - 지붕, 휴게 벤치, 외부 확인이 가능한 쾌적한 옥내형 공간 조성 등
- 관리사무소, 경비실 인근에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거나 CCTV 등을 설치하여 이동약자 등의 안전한 차량이용과 필요시 인적서비스 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.
- 차량의 규모, 탑승 형태(측면, 후면)를 고려한 연결동선(보도 턱낮춤 또는 경사로 설치)과 충분한 활동공간 확보를 고려한다.
- 승하차 구역 이용에 대한 시인성 높은 안내시설 설치를 권장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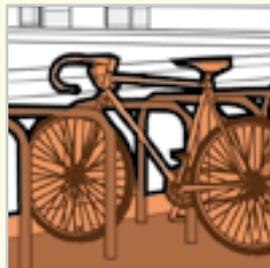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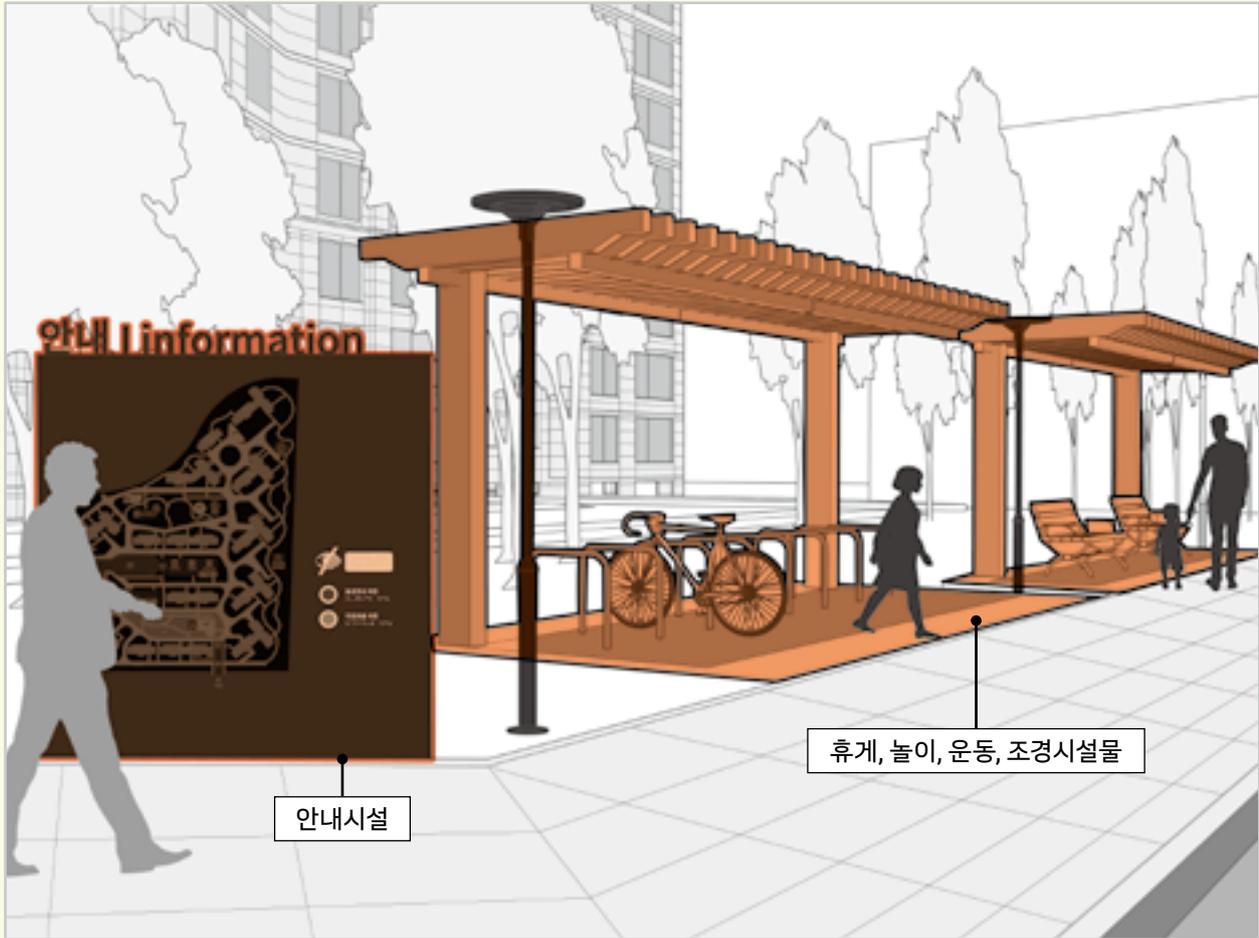
옥외형 승하차 공간



옥내형 승하차 공간



(4) 안내 및 기타공간



계획원칙

- 단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단지 내 쉬운 길 찾기가 가능하도록 누구나 이해 및 이용하기 쉬운 안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.
- 단지 내 다양한 공간과 시설은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되, 이용 가능한 공간과 시설 등은 입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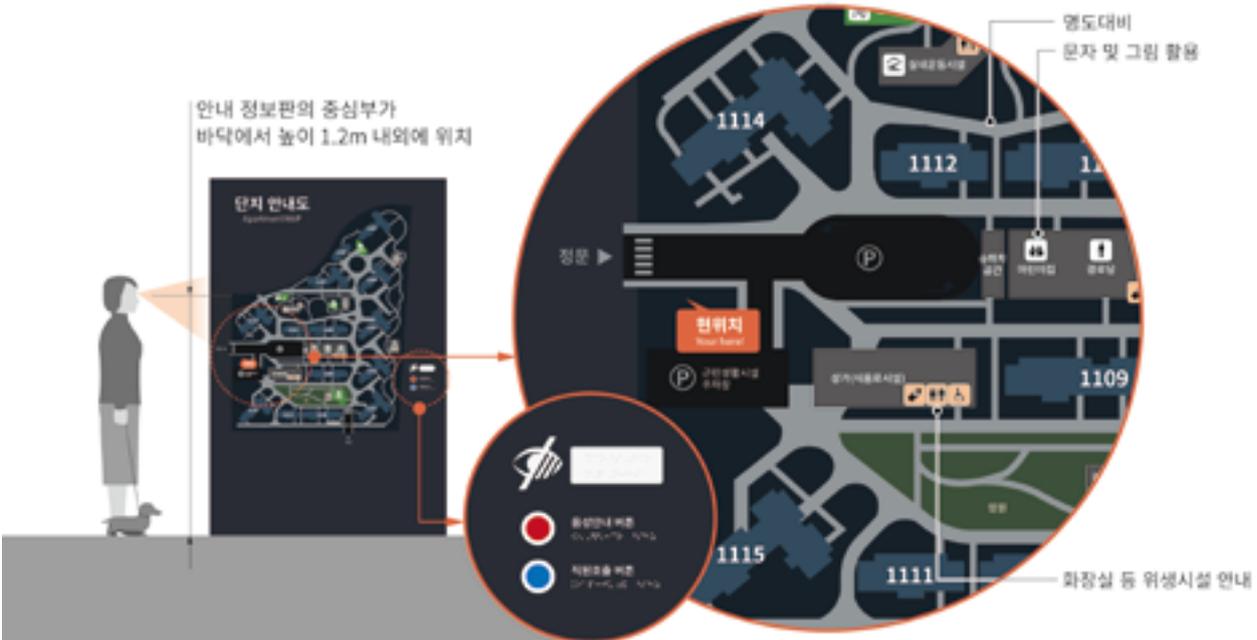
1 안내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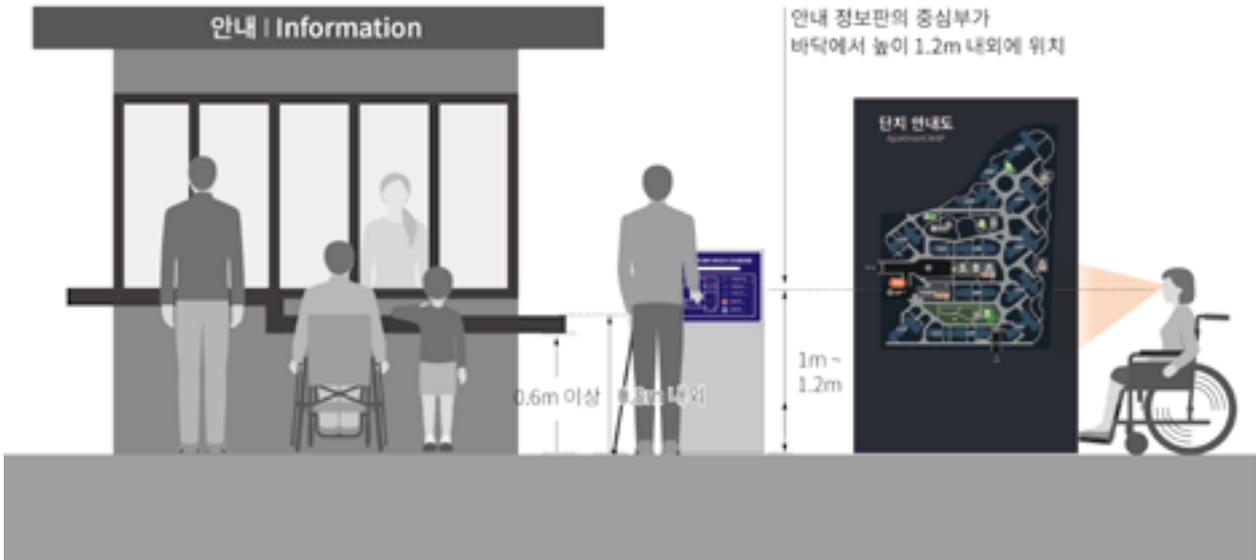
기본지침

- 단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단지 내 공간과 시설의 위치, 방향과 목적 공간까지 이르는 동선을 쉽게 이해 및 인지할 수 있는 안내시설을 설치한다.
- 단지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요 공간과 시설 등의 목적 공간까지 연속적인 길 안내가 가능한 방향 안내시설을 설치한다.
- 안내시설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하되,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.

종합안내

- 단지 내 주요시설 및 위치와 방향이 명확히 전달되는 종합안내사인을 설치하며,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 인적 안내가 가능한 공간 인근에 설치한다.
 - 안내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자와 그림으로 표현되어야 하며, 색약자, 시력저하자 등도 인지할 수 있도록 크기 및 명도 대비, 빛 반사 및 번짐이 최소화 되도록 재질과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.
 - 내식성, 내열성 등 외기 환경에 따른 변형과 훼손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하며, 접촉식 안내판의 경우 금속 사용을 지양하며, 금속재질을 사용할 경우 표면 코팅, 차양 설치 등으로 표면 가열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.
 -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를 병행 또는 통합 설치한다.
- ▣ 그 외 종합안내와 관련된 사항은 ‘공원-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-종합안내시설’과 ‘공공건축물-안내 및 기타 이용시설-안내시설’을 참고하여 설치한다.





방향안내

- 주요 보도의 교차로와 주요 시설의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.
 - 글자의 크기 및 배색을 고려하여 멀리서도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, 목적 시설의 방향과 소요거리 등을 표기한다.
- ▣ 방향 안내와 관련된 사항은 '공원-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-방향 안내'와 '공공건축물-안내 및 기타 이용시설-안내시설'을 참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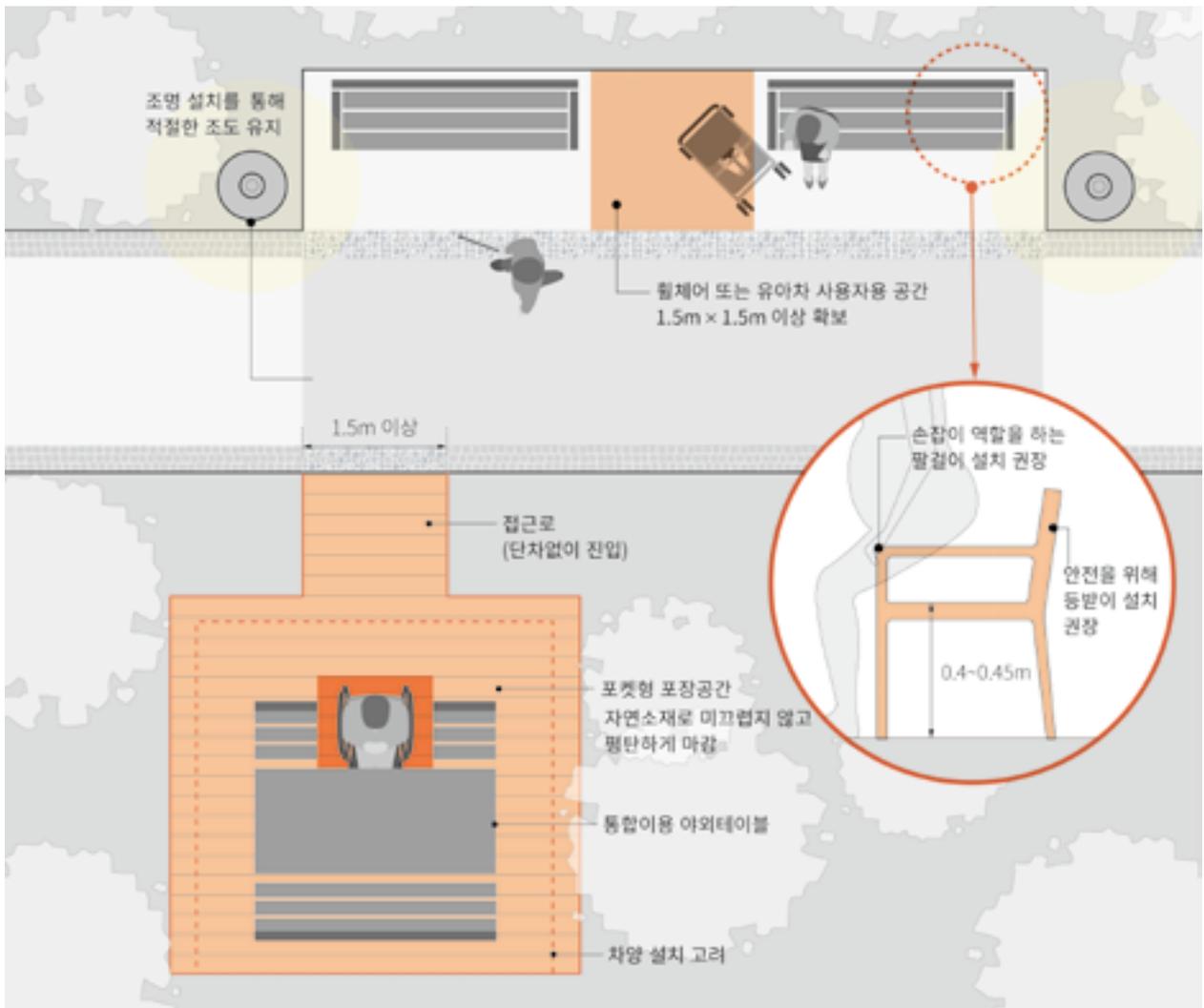
기본지침

- 단지 내 휴게공간, 놀이공간, 각종 생활 지원 공간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, 공간과 시설의 출입구는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.

휴게공간

- 단지 내 산책로, 보행로, 놀이공간, 정원 등 이동통로와 주요 공간에는 대기, 휴식, 자연감시 등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설치한다.
- 휴게공간은 보행로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알코브형으로 설치하고, 휠체어 사용자, 유아차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한다.

☞ 휴게공간 등의 세부 사항은 '공원-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-내부 이용 공간'을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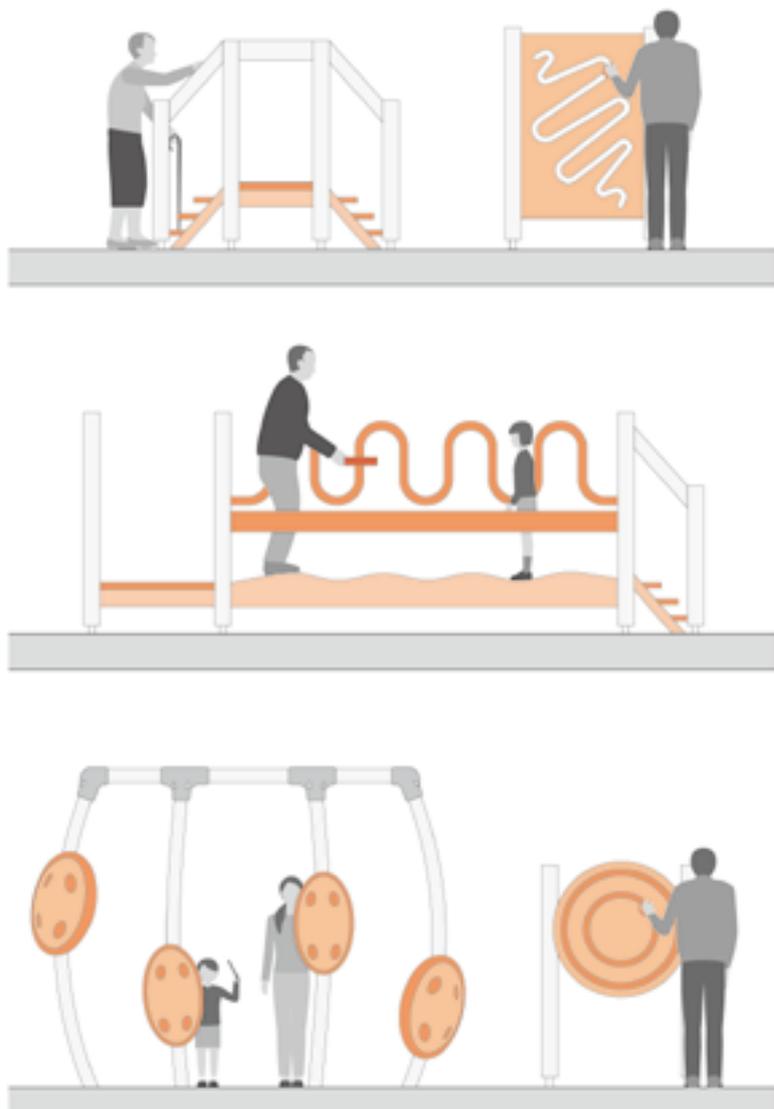


놀이 및 운동공간

- 소음, 안전 등을 고려하여 주동 및 차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고, 주변에 안전을 위한 녹지대, 휴게공간 등 버퍼존을 설치한다.
 - 주동 및 차로에서 5m 이상 이격 설치 권장
- 안심 공간 조성을 위해 경비실, CCTV 등으로 감시 기능을 확보하고, 일부 세대 또는 보호자가 휴식하며 자연감시가 가능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한다.
-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등은 외기 환경변화에도 쾌적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권장한다
 - 실버 운동기구 등은 강한 일조, 우천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필로티 하부 공간에 설치하거나 그늘막 등을 설치 권장
- 입주자 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세대 간 통합을 위한 놀이 및 운동기구 설치를 권장한다.
 - 무장애 놀이터, 통합형 놀이터(초세대 놀이터) 등 설치 권장
- 놀이 및 운동공간의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를 사용하며, 평탄한 마감재로 설치하여 휠체어, 보행보조기, 유아차 등 바퀴 달린 탈것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견고한 재질로 설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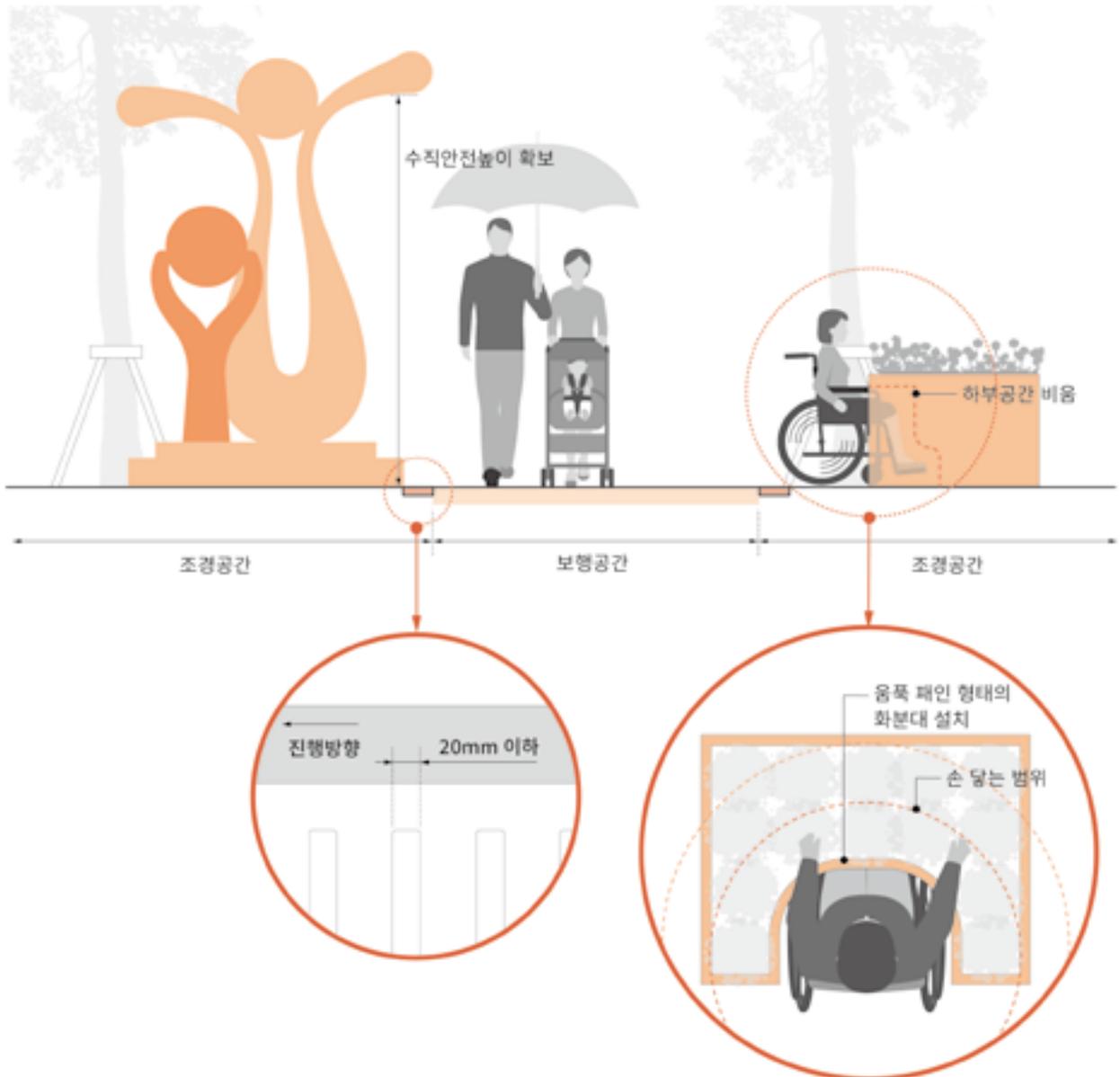


초세대 놀이기구 *Lappset 제품을 사용함



조경시설물

- 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한다.
- 미술작품 등 시설물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, 우산 걸림이나 자전거 탑승 시 머리 부딪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수직 안전 높이를 확보한다.
- 조각품 등 미술작품(미술장식, 미술품) 설치 시 보행공간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.
- 고령자, 어린이 등의 정서 발달을 위해 단지 내 공동텃밭 계획을 고려하며, 휠체어 사용자들도 식물이나 작물을 만지고, 가꿀 수 있도록 책상형 화분대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.
 - 텃밭 설치 시 보행로 내 오염,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배수설비 설치 권장(배수시설을 보행로 내 설치 시 배수뚝개 틈새는 20mm 이내)
- 놀이 및 운동공간, 텃밭 등에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수전/세족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.
 - ▣ 단지 내 수전/세족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'공원-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-편의시설'을 참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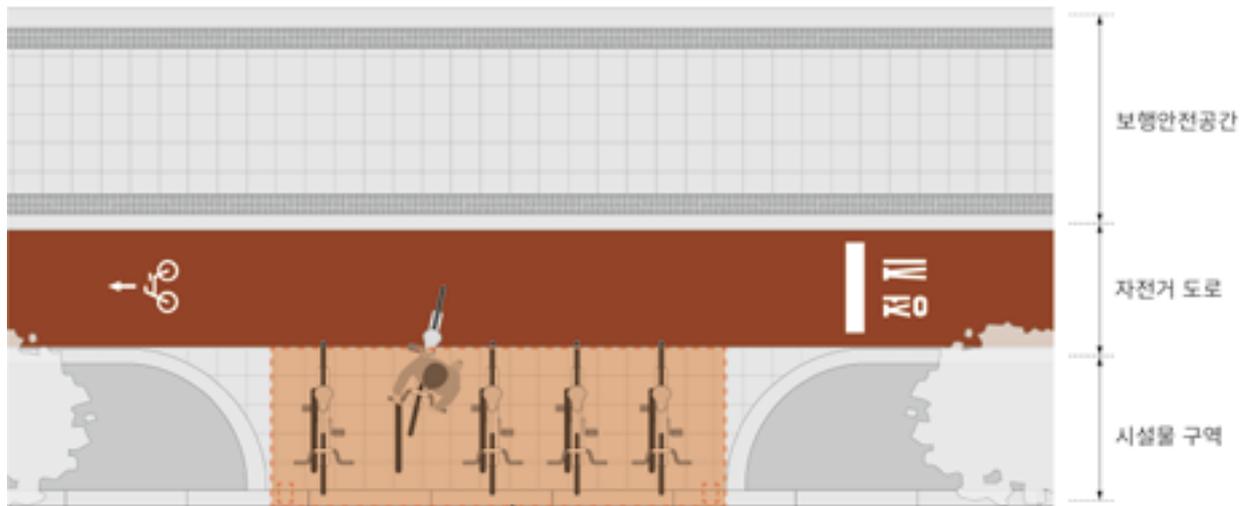
생활폐기물 보관공간

- 생활폐기물 보관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, 저층부 단위세대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 설치한다.
 - 폐기물 수거를 위한 5톤 이상 수거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설치(폭 4m 이상 도로와 인접 설치)
 - 지하 공간에 설치할 경우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
- 내부 통로 및 활동공간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및 활동에 어려움 없도록 하며, 바닥은 습윤 시 미끄럽지 않은 재질(정적마찰계수 0.5 이상)로 설치한다.
- 폐기물 용기는 투입구는 누구나 쉽게 그 용도를 인지할 수 있으며,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높이 및 형태의 제품으로 설치한다.
 - 투입구 권장 높이: 0.85m
 - 기물 용기별 용도 확인이 쉽도록 안내시설 설치
- 폐기물 세척, 손 세척, 청소 등을 위해 개수대와 트랜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, 개수대 수도꼭지는 레버형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.
-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, 동작감지 자동조명 설치를 고려한다.
- 소방 안전 등을 위해 불꽃감지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고, 소화 설비를 인근에 배치한다.



자전거 보관대

- 자전거 보관대는 보행로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,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도록 설치한다.
- 자전거 보관대는 고령자, 어린이 등이 쉽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, 외기의 환경 변화에도 보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및 형태를 고려한다.
 - 쪼그려 앉거나 과도하게 숙이지 않고도 고정할 수 있는 프레임 거치형 제품, 접근과 조작 용이성 확보를 위해 거치대 사이가 충분히 이격된 제품 설치를 권장
 - 자전거 에어펌프 등 간단한 정비가 가능한 설비 설치 권장
 - 구조물 하부(필로티 등) 외 천장이 없는 공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자전거 녹슨 방지 등을 위해 천장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일체형 제품으로 설치 권장
- 자전거 보관대 인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소 설치를 검토한다.



환기구/환풍구

- 환기구는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세대의 시야 확보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하며, 급기와 배기를 이격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환기구는 어린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로 계획하며, 안전 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.

